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1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군산시

목 차

Ⅰ. 복 지 정 책 과

1. 사회보장급여 통합업무 ····· 03
2. 군산 안심서비스 앱 시행 ····· 04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 05
4. 노숙인관리(귀향여비, 신애원) ····· 06
5.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07
6.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08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 09
8. 긴급복지 지원사업 ····· 10
9.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11
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 12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3
12.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 14
13. 정부양곡 지원사업 ····· 15
14.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 15
15. 의료급여 본인부담지원제도 ····· 16
16.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 ····· 17
17.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18
18.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 19

Ⅱ. 경 로 장 애 인 과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3
20.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 24
21.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 25
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ㆍ방과후활동사업 ····· 26

23. 희망찬 내일의 초석 자활사업 ····· 27
24.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 28
25.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 29
26.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30
2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31
28. 재가여성장애인 CCTV지원사업 ····· 32
29.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 32
30.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 33
3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33
32. 장애인 일자리 지원 ····· 34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 35
34.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사업 ····· 36
35.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 37
36. 장애수당 지원사업 ····· 38
37.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 38
38. 기초연금제도 ····· 39
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0
40. 노인일자리사업 ····· 41
41. 노인건강진단 ····· 42
42. 노인무료급식지원 ····· 43
43.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44
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재가급여·시설급여) ····· 45
4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 46
46. 개장 신고·허가신청 ····· 47

Ⅲ. 아 동 청 소 년 과

4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51
48.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시행 ····· 52

49. 군산시 부모학교 운영 ····· 53
50. 장난감도서관(소룡점) 운영 ····· 54
51.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 55
52. 보육료 지원사업 ····· 56
53. 시간제보육 제공 서비스 ····· 57
54. 아동수당 ····· 58
55.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59
56. 입양아동 지원 ····· 60
57. 가정위탁 아동 ····· 61
58.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62
59. 아동급식 지원 ····· 63
60.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 64
61. 아이맘스 카페운영 ····· 65
6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 66
63. 지역아동센터 지원 ····· 67
64. 청소년 특별지원 ····· 68
65.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 69
66. 청소년증 지원사업 ····· 70
67. 어린이공연장 운영 ····· 71

Ⅳ. 여 성 가 족 과

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75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 76
7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77
71.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78
72. 여성사회대학 운영 ····· 79
73.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 80
74. 사랑의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 ····· 81

75.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 ····· 82
76.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3
7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84
78.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지원 ····· 85
79.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86

Ⅴ. 주 택 행 정 과(주거복지)

80. 주거급여 ····· 89
8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90
82.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91
83.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92
8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93
85.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 94
86.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대상자 추천 ····· 95

Ⅵ. 보 건

87. 영양플러스사업 ····· 99
88. 저소득층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 100
89. 방문건강관리사업 ····· 101
9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102
9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02
92. 난임부부 지원사업 ····· 103
93.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04
94. 산후 조리비용 지원사업 ····· 104
9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105
9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106
97.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사업 ····· 107
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108
9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 109

100. 선천성 난청검사 의료비 지원 ····· 110
10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111
10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112
103. 치매조기검진사업 ····· 113
10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114
105.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115
106. 치매노인실종예방 및 조호물품지원 ····· 116
107.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등 운영 ····· 117
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118
109.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 119
110. 국가필수예방접종 ····· 120
111.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121

Ⅶ. 기 타

112. 희망스터디 ····· 125
113. 마중물 사업 ····· 126
114. 에너지바우처 사업 ····· 127
115. 연탄쿠폰 지원 사업 ····· 128
116. 등유바우처 지원 사업 ····· 128
117. 취약계층 에너지(LED) 복지사업 ····· 129
118.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 129
119. 취약계층 가스안정장치 보급 사업 ····· 130
12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 130
121.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 ····· 131
12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132
123. 물복지 급수공사 지원사업 ····· 133
124. 장애인체육관 운영 ····· 134

(부록) 사회복지시설·기관 주소록 ····· 137

Ⅰ. 복지정책과

NO. 1

사회보장급여 통합업무

구분	유형 ① (통합조사팀 조사 후 사업팀 이송)	유형 ②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유형 ③ (시·군·구 또는 보건소 접수)	유형 ④ (읍·면·동 즉시 처리)
대상사업	-기초생활보장 (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장애인등록 및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차량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상담신청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소)	읍면동
⇩	↓ (시군구 요청)	↓	↓	↓ 즉시처리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택조사 의뢰 (기초생활)	읍면동 또는 사업팀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양육수당, 아동수당 별도조사 없음	사업팀 (또는 보건소) 자격확인 소득재산 확인	
⇩	↓	↓ (시군구 요청)	↓	
보장결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또는 보건소) 결정, 통지	
⇩	↓	↓	↓	
급여·서비스	사업팀 급여 지급	사업팀 서비스 제공	사업팀 (또는 보건소) 급여·서비스제공	
⇩	↓	↓	↓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읍·면·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사업팀 (또는 보건소)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보장중지	사업팀 급여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사업팀 (또는 보건소) 급여중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NO. 2

군산 안심서비스 앱 시행

복지기획계	☎454-3063

구 분	내 용
목 적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민이 안심서비스 앱을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 · 시행 하고자 함
대 상	■ 군산 일반 시민 및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고령, 장애 등 취약계층 1인 가구
앱 소개	■ 지정시간(최소 12시간 이상)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하여 빠른 구호가 가능 ■ 문자 발송 전 경고음을 통해 본인의 확인 과정 거침(30분간) ■ 별도 서버가 없이 휴대폰으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음 ■ 단, 휴대폰이 꺼져 있을 경우 앱이 작동하지 않으니 항상 충전 필요
앱 사용 흐름도	■ 일반시민 ■ 고령, 장애 등 취약계층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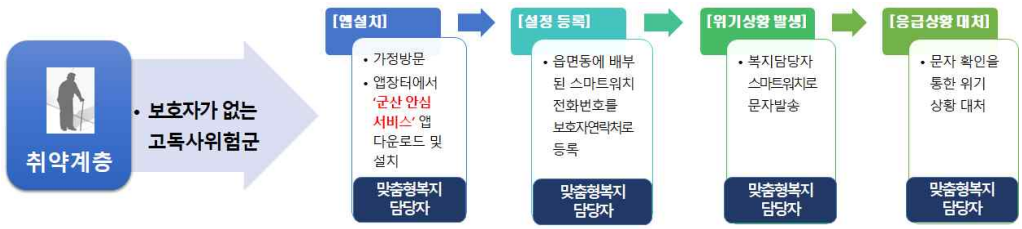
앱 설치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SK '원스토어' ■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 가능

NO.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복지기획계	☎454-306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대상자
1. 6.25참전, 월남참전자 본인 및 사망시 배우자
2.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및 사망시 배우자
3. 애국지사·순국선열,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5. 보국수훈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 본인</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 수시</td></tr>
<tr><td>신청방법</td><td>■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구비서류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td></tr>
<tr><td colspan="2">지급대상자 결정</td><td>■ 관할 보훈지청에 의뢰하여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월 지급액</th><th>비 고</th></tr>
<tr><td>참전명예수당</td><td>8만원</td><td>*사망위로금 1회 15만원</td></tr>
<tr><td>보 훈 수 당</td><td>3만원 또는 7만원</td><td></td></tr>
</table>
※ 분기별 지급(매분기 다음달 20일)
</td></tr>
</table>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노숙인관리
(신애원, 귀향여비)

NO. 4

복지기획계 신애원	☎454-4122 ☎445-1782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금전이 없는 노숙자</td></tr>
<tr><td rowspan="3">신
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table>
<tr><td>노숙인 발생</td><td></td><td>관계기관
신병인수</td><td></td><td>보호기관
경 유</td><td></td><td>시 설(신 애 원)
인 계</td></tr>
<tr><td>가 족 해 체
질 병</td><td>⇨</td><td>시(읍면동)
파 출 소</td><td>⇨</td><td>군산시</td><td>⇨</td><td>상담 및 연고자 확인
건강상태 파악
입소심사</td></tr>
</table>
</td></tr>
<tr><td>신청서류</td><td>■ (신애원) 입소시설 보호 요청서
■ (귀향여비)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td></tr>
<tr><td colspan="2">신청기준</td><td>■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노숙인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노숙인 귀향여비(주소지 차비 및 시내버스 요금)
■ 행려환자 비급여분 진료비</td></tr>
</table>

NO. 5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계	☎454-3072
군산종합사회복지관	☎461-655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일부 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및 전화 접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문의(각 사업별 구비서류 상이)
사업 및 지원내용		■ **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 경제·정서 지원, 일상생활지원, 기타 자원연계 등 ■ **아동 꿈 찾기 프로젝트(Dream School) 지원사업** : 중2, 중3, 고1~3 – 자아탐색, 전문멘토링, 드림리더스, 보호자 교육, 드림프로젝트, 꿈지원금, 여름캠프 및 홈커밍데이 등 운영을 통한 아동의 꿈 찾기 지원 ■ **청소년 기자단 사업** : 자원봉사 참여 희망 청소년(중1~고3) – 동아리활동,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 **가족자원봉사단 사업** :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정(60가정 정도) – 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등 ■ **아동 및 성인 피아노교실** : 군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20세 이상 성인 – 피아노교실 운영(월~금), 연주회, 특별활동, 평가회 등 ■ **치매예방인지 증진프로그램 "기억키움청춘학교"** – 두뇌튼튼 체조, 치매예방통합교육 등 진행 ■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등 – 매일 중식 도시락 제공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 결연후원, 후원물품, 겨울나기, 명절지원, 밑반찬 지원 등 ■ **명절지원서비스** : 소외된 지역주민 –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명절음식 및 물품지원 ■ **꿈 디자이너 사업(초등, 중등)** : 꿈에 대한 의지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자아탐색, 비전원정대, 캠프, 아카데미, 보호자활동, 꿈지원금 등 ■ **푸드뱅크** : 기부식품, 생화용품, 후원물품 등 지원 ■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 향상 및 희망찾기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산업장해판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통원요양 2년 이상인 자 – 사업내용 : 심리기능향상, 사회기능향상, 직업기능향상 등 ■ **미소마을어울한마당** : 미소마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실현과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축제의 장 – 사업내용 : 체험부스, 바자회, 무료급식 등 ■ **재활용수집 노인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 – 통합사례관리, 안전 및 위생교육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의기능을 강화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등 ■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미소마을공동체사업"마을, 서로를 보듬다"** :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 – 주민활동가정기모임, 마을미디어활동, 마을배움터, 환경캠페인, 밥상공동체, 마을나눔장터 ■ **아동 놀이자치활동을 통한 놀권리 인식변화와 확산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프로젝트 "미소마을 행복놀이터"** : – 놀이자치회활동, 놀이출제(물놀이&아동골목놀이), 놀권리대회등 ■ **그 외의 사업** – 주민역량강화사업, 어르신 경로잔치, 미소마을어울한마당 등

NO. 6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계	☎454-3072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462-7260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일부 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및 전화 접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문의(각 사업별 구비서류 상이)
사업 및 지원내용		■ **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 경제·정서 지원, 일상생활지원, 기타 자원연계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 연계사업** : 지역주민 누구나 – 지역주민의 심신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 **정신장애인 심리지원사업** : 경한 정도의 정신 장애인 – 정신장애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심리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 ■ **불쏘시개 봉사단 연계 밑반찬지원서비스** : 영구임대단지에 거주, 1인 가구 – 월 1회 밑반찬 지원(가족봉사자 매칭) ■ **(월동지원)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 김장김치 지원, 난방물품 지원 등 ■ **경로식당 중식지원 서비스(무료급식소)**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세 미만 중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월~금, 주5회 중식제공(11:40 ~ 12:40) ■ **빵나눔 서비스** : 간식지원(빵) 욕구가 있는 사람(월 1~2회 간식 지원) ■ **일상생활지원사업** : 해당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방문 이·미용, 민원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정서적 지원 서비스** : 사회·경제·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 명절 인사 및 선물 전달 지원(연 2회) ■ **(장애인 건강 지원)재활운동실 운영** : 등록장애인 중 재활운동이 필요한 사람 – 주6일 재활운동실 운영, 주1회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쉼터 및 성인장애인 자조모임 등 ■ **노인여가문화사업 운영**군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 –신바람노인대학: 동아리활동, 봄나들이, 스승의 날, 운영위원회 등 –노인심리지원사업: 치매예방인지증진교실 상하반기 운영 ■ **동네방네 팟캐스트** : 라디오방송와 정기모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 방송국 견학, 녹음방송,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등 ■ **주민기자단을 통한 마을신문 발행사업** : 주민기자단 활동 희망 주민 – 동행 취재, 기자 양성교육, 단합프로그램, 연4회 마을신문 제작 등 ■ **주민주도형활동기획사업** : 영구임대단지 거주, 주민모임에 관심이 있는 주민 – 정기모임, 역량강화 워크샵, 지역캠페인, 지역주민인식조사, 단지내 환경정화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경로장애인과 연계하여 진행(☎454-3183) ■ **그 외의 사업** – 주민한마당 축제, 어버이날 행사, 비단구름전통문화잔치, 주민열린노래방, 장수사진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사랑의 열매)

NO. 7

희망복지지원계	☎454-308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불가할 경우,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신청)
신청	신청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예산 범위 내 1년에 1회)**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의료비의 경우,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실을 통하여 신청
	신청서류	■ 공통서식 : 표준양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의료비의 경우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관 통장 사본 – 화재피해의 경우 : 화재증명원, 증빙사진 – 생계비· 화재피해 지원의 경우, 본인 통장 사본 – 이 밖에 지원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천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1,828 / 3,088 / 3,984 / 4,876 / 5,757 / 6,629 **※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 여부 및 금액 결정**
지원내용		■ 긴급 생계비 : 100만원 이내 ■ 긴급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입원 중인 자에 대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제외) – 병원기관 통장으로 입금 ■ 화재피해 지원 – 전소 : 300만원 이내 / 반소 : 150만원 이내 / 부분소 : 100만원 이내 **※ 기초수급자 경우, 기지원받는 항목은 제외**

NO. 8

긴급복지 지원사업

희망복지지원계	☎454-308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갑작스런 위기사유(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td></tr>
<tr><td colspan="2">지원기준</td><td>■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18백만원이하
■ 금융 - 500만원이하(주거지원 700만원이하 작용)

※ 2021년 기준 긴급지원기준 (단위 : 천원)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소득인정액</td><td>1,370</td><td>2,316</td><td>2,987</td><td>3,657</td><td>4,318</td><td>4,971</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생계지원
(6회)</td><td>474,600</td><td>802,000</td><td>1,035,000</td><td>1,266,900</td><td>1,496,700</td><td>1,722,100</td></tr>
<tr><td>주거지원
(12회)</td><td colspan="2">290,300</td><td colspan="2">422,900</td><td colspan="2">557,400</td></tr>
<tr><td>교육지원
(2회)</td><td colspan="6">초등-221,600 중학생-352,700
고등학생-432,900 + 수업료·입학금</td></tr>
<tr><td>연료비
(6회)</td><td colspan="6">월98,000원(동절기10~3월)</td></tr>
<tr><td>해산비
(1회)</td><td colspan="6">1인당 700천원</td></tr>
<tr><td>장제비
(1회)</td><td colspan="6">1인당 800천원</td></tr>
<tr><td>의료비</td><td colspan="6">3,000천원한도내</td></tr>
</table>
</td></tr>
</table>

NO. 9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희망복지지원계	☎454-308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2021. 1월 ~ 2021. 12월 (예산 범위 내 2년에 1회)</td></tr>
<tr><td>신청방법</td><td>■ 해당 주민센터 방문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소득 - 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 130백만원이하
■ 금융 - 10백만원이하
※ 2021년 기준 군산형 긴급지원기준 (단위 : 천원)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소득인정액</td><td>1,553</td><td>2,624</td><td>3,386</td><td>4,144</td><td>4,893</td><td>5,634</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단위 : 천원)
<table>
<tr><th>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r>
<tr><td>생계 지원</td><td>300</td><td>500</td><td>700</td><td>900</td><td>1,000</td></tr>
<tr><td>주거 지원</td><td colspan="2">200</td><td colspan="2">350</td><td>400</td></tr>
<tr><td>의 료 비</td><td colspan="5">1,000천원 한도내</td></tr>
<tr><td>간 병 비</td><td colspan="5">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5일 이상 입원</td></tr>
<tr><td>기 타</td><td colspan="5">가구 또는 가구원 최대 100만원 이내</td></tr>
</table>
※ 생계·주거 지원의 경우 총 2회 지원</td></tr>
</table>

NO. 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희망복지지원계	☎454-308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2021. 1월 ~ 2021. 12월 (예산 범위 내 1년에 1회)</td></tr>
<tr><td>신청방법</td><td>■ 해당 주민센터 방문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신청서
■ 구비서류
– 생계비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1부와 진료비 영수증
– 체 납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table>
<tr><th rowspan="2">가구규모</th><th rowspan="2">기준 중위소득
80% 이하</th><th colspan="2">재산 기준</th></tr>
<tr><th>일반재산</th><th>금융재산</th></tr>
<tr><td>1인</td><td>1,462천원</td><td rowspan="6">8,500만원 이하</td><td rowspan="6">500만원 이하</td></tr>
<tr><td>2인</td><td>2,470천원</td></tr>
<tr><td>3인</td><td>3,187천원</td></tr>
<tr><td>4인</td><td>3,901천원</td></tr>
<tr><td>5인</td><td>4,605천원</td></tr>
<tr><td>6인</td><td>5,302천원</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지원 금액 : 1가구 300천원 범위 내 ※ 본인계좌 입금 원칙
■ 생계 지원 : 1~2인 200천원 / 3인 이상 300천원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30만원 이내로 질병 또는 부상 등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체납액 100천원 이상 300천원이내 해당 요금 계좌로 입금</td></tr>
</tab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NO. 11

기초생활계	☎454-314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상담 후 신청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소득,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선정기준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매월 20일 정기 지급 (토, 일요일인 경우 ➠ 그 전일에 지급) ■ 지원금액 (단위:원)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수급자, 차상위 등)

NO. 12

기초생활계	☎454-3142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지원 대상자 및 감면 내용</td><td>
<table>
<tr><th>대상자</th><th>TV 수신료</th><th>전기요금</th><th>이동통신요금</th><th>도시가스요금</th><th>지역난방 요금</th></tr>
<tr><td>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td><td>면제</td><td>·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td><td>·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td><td>·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td><td>· 월 10,000원</td></tr>
<tr><td>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td><td>해당 없음</td><td>·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td><td>·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td><td><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td><td>· 월 5,000원</td></tr>
<tr><td>차상위 계 층</td><td>해당 없음</td><td>·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td><td>·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td><td><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td><td><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td></tr>
<tr><td>장애인</td><td>면제
(1~3급 장애인에 한함)</td><td>·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td><td>· 월 이용료 35% 감면</td><td>·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한함</td><td>· 월 5,0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td></tr>
</table>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 수도세 감면 군산시 해당없음.(지자체별 상이)
</td></tr>
<tr><td>신청 방법</td><td>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td></tr>
</table>

NO. 13

정부양곡 지원사업

기초생활계 한마음지역자활센터	☎454-3143 ☎446-412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기준	구분 / 생계 · 의료급여 / 주거 · 교육 · 차상위 10kg (본인부담액) / 2,800원 / 11,900원
지원내용	■ 구입 가능량 : 1인당 월 10kg ■ 운 송 비 : 10kg 2,600원 ■ 양 곡 배 달 : 매월 20일 ~ 익월 5일까지 직접 가정에 배달 (농림부와 희망나르미협동조합 일괄계약 - 희망나르미(한마음지역자활센터))

NO. 14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기초생활계	☎454-314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 인 세 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16,03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근거	■ **군산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방법	■ **매월 지원대상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NO. 15

의료급여 본인부담지원제도

의료보장팀	☎454-3151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여부	비고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매월 6천원	미신청	1. 잔액 다음연도에 계좌입금 2. 본인부담면제자 제외
본인부담 보상금	(1종) 매월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지원	미신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연계
본인부담 상한제	(1종)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 (2종)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미신청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시 전액환급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중증외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본인부담면제 2.1종자격부여 3.의료급여 절차예외 4.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산정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제출	1.희귀,중증난치질환, 암환자:등록일로 5년, 2.중증화상환자:등록일로 1년(6개월 연장가능) 3.결핵:치료 종료시 4.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최대30일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60만원 (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기간 : 보장기관의 지원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생일)로부터 1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

NO. 16

의료보장팀	☎454-3151

구 분	내 용(사례관리)
내 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을 제공
대 상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과다의료이용자
관 리	■ 보장기관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 전화, 서신, 자원연계로 관리 ①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②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③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 방법 지도 ④ 수급자와 보장시설 등 경로장애인과의 연계

구 분	내 용(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
의료급여 일 수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일수 + 입원일수 + 투약일수 = 급여일수
상한일수	■ 상한일수는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질환별 상환일수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함

질환구분	연장횟수
기타질환	400일 초과 / 90일 1회 + 추가 55일 1회 = 총2회
암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각 365일 초과 90일 1회
만성고시질환	380일 초과 / 75일 1회

연 장 신청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선정	》	대상자 개별 통보	》	의료기관 의사의 의견이 기재된 '연장신청서'제출 (관할동주민센터)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
복지정책과		해당 읍면동		수급자		복지정책과

유의사항	연장신청서 미제출 또는 의료 오·남용으로 불승인 될 경우 의료급여제한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약국 30%

NO. 17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의료보장팀	☎454-315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상담 후 신청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요양비 청구서류(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처리기한	■ 15일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의료급여 지원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선정기준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산소·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를 현금급여로 지급

■ 매월 수시 지급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지원품목)	지원금액
질병·부상, 출산요양비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 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소모성재료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1일 10,420원
당뇨병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1일 / 2,500원) 제2형 당뇨(1일 /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주 / 70,000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1일 9,000원(1일 최대 6개 이내)
산소치료 요양비	가정용: 120,000원 휴대용: 200,000원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혼합형: 월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월 356,000원
기침유발기 요양비	월 160,000원
양압기 요양비	지속형(월 76,000원) 자동형(월 89,000원), 이중형(월 126,000원)

NO. 18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보장팀	☎454-3151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td></tr>
<tr><td rowspan="4">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 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상담 후 신청</td></tr>
<tr><td>신청서류</td><td>■ 필수서류 : 보장구 신청서류(신청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td></tr>
<tr><td>처리기한</td><td>■ 10일</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의료급여 지원기준 : 중위소득의 40% 이하
<table>
<tr><th>구분(원/월)</th><th>1인가구</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
<tr><td>기준 중위소득</td><td>1,827,831</td><td>3,088,079</td><td>3,983,950</td><td>4,876,290</td><td>5,757,373</td><td>6,628,603</td></tr>
<tr><td>선정기준</td><td>731,132</td><td>1,235,232</td><td>1,593,580</td><td>1,950,516</td><td>2,302,949</td><td>2,651,441</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급여내용 : <u>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u>을 대상으로 전동 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수시 지급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85개 품목
■ 공통기준
· <u>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u>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u>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u>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u>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u></td></tr>
</table>

Ⅱ. 경로장애인과

NO.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영유아에서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세부 사업별 별도 기준 적용)
신청	신청기간	■ 2021. 1. 4 ~ 1. 20 (3주) ■ 2021. 7. 1 ~ 7. 20 (3주) ※ 집중 신청(1월, 7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각 사업별 구비서류(진단서,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인바디검사결과지 등)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선정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대상자 연계. 우선 선정 ☞ 실 수요자 중심
지원내용		■ **15개 사업**(아동재활3, 아동역량개발3, 정신건강관리2, 신체건강관리5,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2) 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도개발)** 4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5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6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꿈을잡자) 7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19년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통.폐합) 8 성인심리지원서비스 9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A:수영, B:마루) 11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12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1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도개발)** 14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15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NO. 20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수시 신청. 접수</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시 생략)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관련부서 추천의뢰</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예산범위 내 월별 선정 (※ 예산부족 시 대기자로 관리)</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시간당 단가 : 14,800원
<table>
<tr><th>제공시간</th><th>소득수준</th><th>서비스 가격</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 rowspan="2">월24시간
(A형)</td><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td><td rowspan="2">월 355,200원</td><td>월 355,200원</td><td>면 제</td></tr>
<tr><td>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td><td>월 333,890원</td><td>월 21,310원</td></tr>
<tr><td rowspan="2">월27시간
(B형)</td><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td><td rowspan="2">월 399,600원</td><td>월 387,610원</td><td>월 11,990원</td></tr>
<tr><td>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td><td>월 375,620원</td><td>월 23,980원</td></tr>
<tr><td>월40시간</td><td>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td><td>월 592,000원</td><td>월 592,000원</td><td>면제</td></tr>
</table></td></tr>
</table>

NO. 21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언어발달지원**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신청	신청기간	■ 수시 신청.접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만6세미만 발달장애가 예견된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지)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월별 선정 (※ 예산부족 시 대기자로 관리)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최소 월4천원~ 월4만원

NO. 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방과후활동사업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12세이상~만18세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신청	신청기간	■ 수시 신청.접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 – (주간활동) : 기초상담 조사표[서식 제3호] – (방과후활동) : 재학증명서 및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월별 선정 (※ 예산부족 시 대기자로 관리) ㄴ(주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30일이내)
지원내용		■ 바우처 단가 : (주간활동) 시간당 14,020원, (방과후활동) 시간당 14,020원

구 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그룹별 단가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 4인 그룹 70%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 그룹 80%
제공시간(월)	단축형 56시간, 기본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	월44시간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방학중 제공시간 변경(9시~18시, 주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 구성 가능)
■ 서비스 제공방식
– (주간활동)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30% 이상 제공, 차량 운행 및 점심제공(실비 수납 가능)
– (방과후활동) 직접제공형 및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NO. 23

희망찬 내일의 초석 자활사업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3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td></tr>
<tr><td>참여자격</td><td>■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td></tr>
<tr><td>자활급여</td><td>☐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th><th>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th><th>근로유지형</th></tr>
<tr><td>지급액계</td><td>56,950/60,950</td><td>49,860/53,860</td><td>29,240</td></tr>
<tr><td>급여단가</td><td>52,950/56,950</td><td>45,860/49,860</td><td>25,240</td></tr>
<tr><td>실 비</td><td>4,000</td><td>4,000</td><td>4,000</td></tr>
<tr><td>표준소득액(월)</td><td>1,376,700</td><td>1,192,360</td><td>656,240</td></tr>
<tr><td>비 고</td><td colspan="2">1일 8시간, 주 5일</td><td>1일 5시간, 주 5일</td></tr>
</table>
☐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시간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th><th>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th><th>별도사업단</th></tr>
<tr><td>지급액계</td><td>30,480/32,480</td><td>26,930/28,930</td><td>49,860/53,860</td></tr>
<tr><td>급여단가</td><td>26,480/28,480</td><td>22,930/24,930</td><td>45,860/49,860</td></tr>
<tr><td>실 비</td><td>4,000</td><td>4,000</td><td>4,000</td></tr>
<tr><td>표준소득액(월)</td><td>688,480</td><td>596,180</td><td>1,192,360</td></tr>
<tr><td>비 고</td><td colspan="3">1일 4시간, 주 5일, 주차·월차 급여단가의 50% 적용</td></tr>
</table>
※ 자활장려금지급
생계수급자의 생계비 책정 시 자활급여의 최대 30%까지 공제 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비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td></tr>
<tr><td>사업유형</td><td>
<table>
<tr><th>구 분</th><th>사 업 내 용</th><th>비 고</th></tr>
<tr><td>Gateway</td><td>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자 대상
→ 사업단 참여 전,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하는 단계</td><td>상담참여 시
실비 지급</td></tr>
<tr><td>시장진입형</td><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희망참여) 등
→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30%이상,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td><td></td></tr>
<tr><td>인턴·도우미형</td><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희망참여) 등
→ 자활인턴으로 근로하며 사업단 행정 관리 업무 보조하며, 기술을 쌓아 취업도모</td><td></td></tr>
<tr><td>사회서비스형</td><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희망참여) 등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td><td></td></tr>
</table>
</td></tr>
</table>

NO. 24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 중 (예산 소진시까지)</td></tr>
<tr><td>신청방법</td><td>■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신청인 :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의사소견서,부채증명서 등), 신청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 :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td></tr>
<tr><td colspan="2">융자유형</td><td>
<table>
<tr><th>구분 \ 종류</th><th>생활안정자금</th><th>자립자활자금</th></tr>
<tr><td>용 도</td><td>임대보증금 또는 의료비, 장제비 등</td><td>재난·복구자금, 농지매입·임대,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등</td></tr>
<tr><td>지원금액</td><td>500만원 이내</td><td>2,000만원 이내</td></tr>
<tr><td>상환방법</td><td>1년거치 3년상환</td><td>3년거치 5년상환</td></tr>
<tr><td>상환시기</td><td>반기납(6월말/12월말)</td><td>반기납(6월말/12월말)</td></tr>
<tr><td>이 자</td><td>무이자(연체시 3%)</td><td>연 1%(연체시 3%)</td></tr>
<tr><td>보증조건</td><td>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 1명</td><td>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1명</td></tr>
</table>
</td></tr>
</table>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NO. 25

자활사회서비스계	☎454-3122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내 용</td><td>
<table>
<tr><th>구 분</th><th>희망키움통장Ⅰ</th><th>희망키움통장Ⅱ</th><th>내일키움통장</th><th>청년희망키움통장</th><th>청년저축계좌
('20.4월시행)</th></tr>
<tr><td>가입대상</td><td>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td><td>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td><td>자활근로
사업단
성실 참여자</td><td>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td><td>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청년
(만15세~39세)</td></tr>
<tr><td>본 인
저축액</td><td>월10만원</td><td>월10만원</td><td>월5/10/20만원</td><td>자유적금</td><td>월10만원</td></tr>
<tr><td>정 부
지원액</td><td>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td><td>본인 저축액
1:1 매칭</td><td>근로장려금
☞ 1:1 매칭
키움장려금
☞사업단에 따라
1:1/1:0.5매칭
키움수익금
☞사업단수익
발생 시
15만원 이내</td><td>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td><td>본인저축액
1:3 매칭</td></tr>
<tr><td>지원 조건</td><td>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td><td>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td><td>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
시장 취·창업 등</td><td>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td><td>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td></tr>
<tr><td>실질혜택</td><td>(3년/3인가구기준)
평균1,695만원</td><td>(3년기준)
평균720만원</td><td>(3년기준)
평균2,232만원</td><td>(3년기준)
평균1,569만원</td><td>(3년기준)
평균1,440만원</td></tr>
</table>
</td></tr>
<tr><td>가입
절차</td><td>■ 읍면동 주민센터(자활근로참여자:지역자활센터) 방문신청 → (시) 검토 후 승인
→ 하나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td></tr>
<tr><td>지급
조건</td><td>■ 지원금의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
■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해야하며, 지원금은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td></tr>
</table>

NO. 26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시설계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454-3122 ☎466-798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및 전화 접수 (군산시 칠성안3길 37 / 466-7981) ■ 세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사업안내 참조(www.gs1004.or.kr)
	신청서류	■ 구비서류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의(각 사업별 구비서류 상이)
사업 및 지원내용		■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 정서지원, 후원 및 결연 ■ **기능강화지원** 재활운동실 운영, 수치료, 물리치료, 심리운동, 특수교육, 예술심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육감각촉진활동, 팜스테이, 장애·비장애통합 숲체험, 긴급치료 ■ **장애인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사업(부모지원, 부모교육) 식생활(반찬·김치 등)지원, 명절행복나눔(연2회), 행복한동행 멘토링사업, 비장애인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발달장애인 사회적 역할찾기, 성인장애인 자기표현향상프로그램, 작업활동반운영, 정보화교실운영(컴퓨터기초반·취업반·영상컨텐츠반), 성인장애인 자조모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연2회), 주거환경개선, 무료치과진료, 보장구 등 비품 대여(휠체어, 목발 등), 시민제안사업공모, 군산지역관광가이드양성사업 ■ **직업지원** 직업상담,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직업적응훈련반운영, 장애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 **지역사회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후원자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체험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유니버설디자인활동 ■ **평생교육지원** 장애유형별·서비스참여자별 나들이,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계절학교, 여가활동프로그램(농구, 탁구, 볼링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보치아교실, 문예창작교실, 공예, 도예, 원예, , 톤차임, 성인국악, 성인미술, 미술작가양성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파견, 이용인 및 활동지원사 상담·교육·사후관리 ■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이용인 만족도 조사 및 욕구조사, 식당운영(1식/점심), 셔틀버스운영(일3회), 차량무상점검(연2회), 직원역량강화사업

NO. 2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시설계	☎454-316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읍면동 비치)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선정기준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단, 5만원 이하 교부품목 1개 제품은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욕창예방 방석 등 34개 품목)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교부

NO. 28

재가여성장애인 CCTV지원사업

장애인시설계	☎454-316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여성 지적 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2021. 2 ~ 3월 (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선정기준		■ 여성 지적 장애인으로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 ■ 우범지역 거주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 거주 등)
지원내용		■ 재가여성지적장애인 방범용 고화질 CCTV 설치하여 범죄 예방

NO. 29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장애인시설계	☎454-316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지적 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2021. 2 ~ 3월 (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선정기준		■ 상습 실종 지적장애인 또는 실종 위험도가 높은 지적장애인 ■ 배회감지기를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자(조건 미충족시 선정 불가)
지원내용		■ 위치추적 장치(GPS)가 탑재되어 있는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으로 지적장애인의 이탈 시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

NO. 30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 장애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신청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대리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여성장애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절차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민원24 선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접속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아 · 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NO. 3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 신청자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내용		■ 심한장애 : 15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이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타법 지원금 차감 후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지원금 차감

NO. 3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계	☎454-317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2020. 11. 25.(수) ~ 2020. 12. 4.(금)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지원내용		

구분	사업내용	근로시간	급여
전일제일자리	행정 및 기관 업무보조	일8시간 주5일	1,822천원
시간제일자리	행정 및 기관 업무보조	일4시간 주5일	911천원
복지일자리	주차계도 및 환경도우미	주14시간 월56시간	488천원

NO.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장애인복지계	☎454-317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21년 4인 기준 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 ■ 단,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지원대상자로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출 지원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기관: 국민은행 ■ 대여이자: 최고 연 3%

NO. 34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세이상~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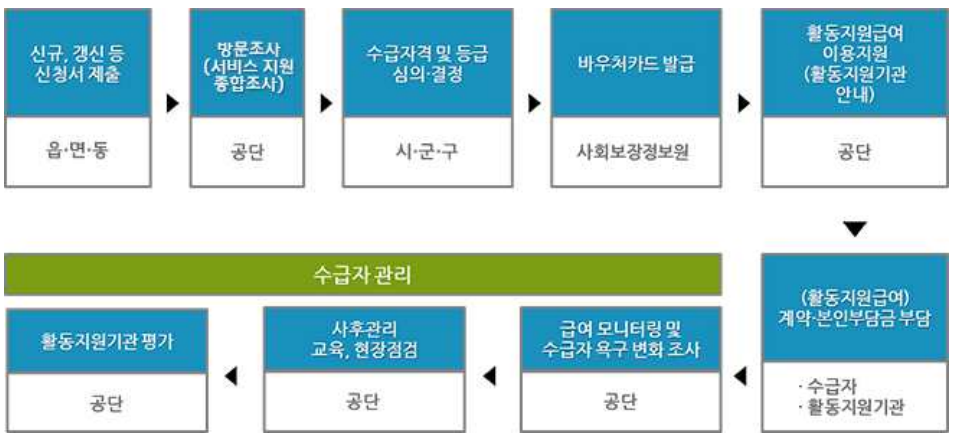
지원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NO. 35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월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자</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만18~64세</th><th colspan="3">만65세 이상</th></tr>
<tr><th>기초급여</th><th>부가급여</th><th>합계</th><th>기초급여</th><th>부가급여</th><th>합계</th></tr>
<tr><td>기초수급자(재가)</td><td>30만원</td><td>8만원</td><td>38만원</td><td rowspan="4">기초연금으로 전환</td><td>38만원</td><td>38만 원</td></tr>
<tr><td>기초수급자(시설)</td><td>30만원</td><td>–</td><td>30만원</td><td>–</td><td>–</td></tr>
<tr><td>차상위</td><td>30만원</td><td>7만원</td><td>37만원</td><td>7만원</td><td>7만 원</td></tr>
<tr><td>차상위 초과</td><td>30만원</td><td>2만원</td><td>32만원</td><td>4만원</td><td>4만 원</td></tr>
</table>
</td></tr>
</table>

NO. 36

장애수당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3,089	3,984	4,876	5,757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 수급자
	4만원	4만원	2만원

NO. 37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계	☎454-317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3,089	3,984	4,876	5,757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 수급자
	중증	20만원	15만원	7만원
	경증	10만원	10만원	2만원

NO. 38

기초연금제도

경로복지계	☎454-318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http://online.bokjiro.go.kr) 접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이력관리신청서 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 선정기준액('21년) :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2)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기본재산액공제 : 중소도시 군산(8천5백만원) ■ 직역연금 기준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대상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를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기초연금액 :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라 감액하는 대상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합산적용 – 【기준연금액 – 2/3 ×(A급여액+연계퇴직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 특례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NO. 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복지계	☎454-3183

구 분		내 용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65세이상(1956년생 출생일 경과자)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지원내용		■ 직접서비스 – 안부확인 : 방문 및 전화 안전확인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지역사회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미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NO. 40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복지계	☎454-3184

구 분	내 용
목 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참여자 모집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참여자격	■ 공익활동(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사업단(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제외
사업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인력파견형사업단 - 수요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을 수료 또는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NO. 41

노인건강진단

경로복지계	☎454-3183

구 분	내 용
목 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 9조
실시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단, 2020년 수검자 중 건강한 자 및 아래 대상자는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실시내용	■ 진단수가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를 준용 ■ 검사항목 : 노인건강진단 항목 – 1차(기본진료, 혈액검사, 기타검사) – 2차(흉부질환, 순환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검사, 낙상검사)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외부의 검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 성매개 감염병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 지원 – 보건소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무료 치매조기검진사업 연계 –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 발견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에 등록·관리

NO. 42

노인무료급식지원

경로복지계	☎454-3182

구 분	내 용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급식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급식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무료급식소 (위탁기관)	군산(구)역전경로식당(☎442-5323), 군산나운종합복지관 경로식당(☎462-7260),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442-4227), 금강노인복지관 경로식당(☎442-0012)

NO. 43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경로복지계	☎454-318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462-7260

구 분	내 용
목 적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응급상황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안전대책 마련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속하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중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제공서비스	■ 댁내 장비를 통한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및 응급출동 지원 - 게이트웨이(심장박동체크, 응급상황/민원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 활동량감지(적외선 감지방식의 천장 부착 전방향 감지) -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 출입감지센서(입·출입을 구분하며, 활동센서와 연동하여 작동) - 무선외출버튼(외출여부 인식, 외출·재실 여부 시스템에 보고) - 응급호출기(부착형으로 대상자가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전화연결)
수행기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462-726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 시설급여)

NO. 44

경로복지계	☎454-3193
국민건강보험공단	☎450-8850

구 분		내 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중풍,파킨스병 등)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 (직접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처리기한	■ 30일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 급여	도서벽지지역에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시설 및 재가급여 입소·이용 신청

NO. 4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장묘시설계	☎454-7956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공설묘지 사용료</td><td>■ 묘 1기당 : 1,000,000원(30년)</td></tr>
<tr><td>화장시설
사용료</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사 용 료</th><th rowspan="2">비고</th></tr>
<tr><th>관내</th><th>관외</th></tr>
<tr><td rowspan="3">시 신</td><td>15세이상</td><td>60,000</td><td>500,000</td><td rowspan="4">사망자가 군산시 거주 외국인 또는 서천군민인 경우에는 관내요금 적용</td></tr>
<tr><td>15세미만</td><td>45,000</td><td>300,000</td></tr>
<tr><td>사산아</td><td>15,000</td><td>150,000</td></tr>
<tr><td>유골(1구당)</td><td>개장유골</td><td>30,000</td><td>300,000</td></tr>
</table>
</td></tr>
<tr><td>추모관
사용료</td><td>■ 개인안치단 : 250,000원(15년)
■ 부부안치단 : 450,000원(15년)</td></tr>
<tr><td>사용료 감면</td><td>
<table>
<tr><th>구 분</th><th>화장장</th><th>공설묘지, 추모관</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td><td rowspan="4">100%감면</td><td>50%</td></tr>
<tr><td>국가유공자</td><td>50%</td></tr>
<tr><td>장기기증 등록자</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현역 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중 사망자</td><td>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td></tr>
<tr><td>사용자격</td><td>■ 공설묘지 : 사망당시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망자
■ 봉안시설 : 사망당시 30일 이상 군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망자
■ 화장시설 : 제한없음</td></tr>
<tr><td>사용기간</td><td>■ 공설묘지 : 사용기간 30년(1회에 한해 30년간 연장가능)
■ 단 기존 설치 후 15년 경과 분묘는 1회에 한해 30년간 연장가능
■ 봉안시설 : 봉안유골은 15년마다 연장가능</td></tr>
</table>

NO. 46

개장 신고 · 허가신청

장묘시설계	☎454-7956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신고대상</td><td>■ 개장을 하려는 자</td></tr>
<tr><td rowspan="4">신
고</td><td>신고기간</td><td>■ 연 중</td></tr>
<tr><td>처리기관</td><td>■ 읍·면·동 주민센터</td></tr>
<tr><td>필수서류</td><td>■ 신고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 허가서류 : 기본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td></tr>
<tr><td>처리기한</td><td>■ 2일</td></tr>
<tr><td colspan="2">처리절차</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주 체</th></tr>
<tr><td>신 고</td><td>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td><td>신 고 인</td></tr>
<tr><td colspan="3">⇩</td></tr>
<tr><td>접 수</td><td>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 관계 확인(제적등본 등)</td><td>처리기관</td></tr>
<tr><td colspan="3">⇩</td></tr>
<tr><td>확 인</td><td>개장 신고·허가 사항 확인</td><td>처리기관</td></tr>
<tr><td colspan="3">⇩</td></tr>
<tr><td>검 토</td><td>개장 신고·허가사항 적합여부 검토</td><td>처리기관</td></tr>
<tr><td colspan="3">⇩</td></tr>
<tr><td>결 재</td><td>개장 신고·허가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td><td>처리기관</td></tr>
<tr><td colspan="3">⇩</td></tr>
<tr><td>관리대장 등 작성</td><td>개장 신고·허가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td><td>처리기관</td></tr>
<tr><td colspan="3">⇩</td></tr>
<tr><td>수 리</td><td>개장 신고·허가자에게 신고증명서 및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td><td>처리기관</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위반시 벌칙</td><td>■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td></tr>
</table>

Ⅲ. 아동청소년과

NO. 4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동정책계	☎454-416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6~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정 우선 ＊ 소득수준 무관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돌봄서비스신청 ⇒ 상담, 돌봄서서비스 이용결정 ⇒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및 확인 (보호자) (센터) (센터) (군산시)
운영계획		■ 운영규모 : 돌봄센터 2개소 ('20년 1개소, '21년 1개 신설 추진) ■ 정 원 : 24명 ■ 운영인원 : 3명(관리자 1명, 돌봄교사 2명) ■ 운영시간 : (학기중) 10:00~19:00, (방학중) 09:00~18:00 ＊ 주5일(월~금) 1일 8시간 상시운영
지원내용		■ 일시 및 긴급 돌봄(비정기적) ■ 시간제 돌봄(정기적) ■ 숙제 및 학습지원 ■ 하교지원

NO. 48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시행

아동정책계	☎454-4165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내 용</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0세 ~만 6세</td></tr>
<tr><td rowspan="4">신청</td><td>보장기간</td><td>■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년)</td></tr>
<tr><td>신청방법</td><td>■ 관내 영·유아 전체 자동가입</td></tr>
<tr><td>보험금 청구서류</td><td>■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등본, 진단서(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기재) 등
※ 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03)</td></tr>
<tr><td>처리기한</td><td>■ 소득·재산 무관</td></tr>
<tr><td colspan="2">보장내용</td><td>☐ 보장내용
<table>
<tr><th>담보사항</th><th>가입금액</th><th>보장내용</th></tr>
<tr><td>상해후유장해</td><td>30,000,000원</td><td>24시간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등급에 따라 3%~100% 지급</td></tr>
<tr><td>암 치료비</td><td>10,000,000원</td><td>암 진단 시 가입금액 지급 (면책일 없음, 최초 1회 한)
(일반암 100%, 기타암 및 갑상샘암 20%)</td></tr>
<tr><td>상해입원일당</td><td>30,000원</td><td>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입원 당일부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td></tr>
<tr><td>조혈모세포이식수술</td><td>5,000,000원</td><td>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지급 (면책일없음, 최초 1회한)</td></tr>
<tr><td>선천이상수술비</td><td>1,000,000원</td><td>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td></tr>
<tr><td>화상발생위로금</td><td>300,000원</td><td>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td></tr>
<tr><td>장애 발생
소득 보상 위로금</td><td>200,000원</td><td>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진단시 장애정도에
따라 가입금액 월별 지급 혹은 확정금액 지급
(최대36개월/가입금액의 300%일시금)</td></tr>
<tr><td>골절진단위로금</td><td>200,000원</td><td>보험 기간중 사고로 골절이 발생되어 진단을 받은 경우</td></tr>
<tr><td>탈구, 압착 손상,
신경 손상 발생
진단금</td><td>200,000원</td><td>탈구, 압착 손상, 신경 손상이 발생되어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td></tr>
</table>
*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 출생아의 경우 보험기간 내 주민등록상 출생일(생일)로 소급하여 적용</td></tr>
</table>

NO. 49

군산시 부모학교 운영

아동정책계	☎454-4163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내 용</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2021년 군산시 부모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성인
(예비 부모, 유아·청소년 부모, 조부모 등)</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2021년 4월 ~ 상시(해당 사업 선착순 모집)</td></tr>
<tr><td>신청방법</td><td>■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안내문 및 신청서 배부, 신청</td></tr>
<tr><td>신청서류</td><td>■ 부모학교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td></tr>
<tr><td colspan="2">처리기한</td><td>■ 소득·재산 무관</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감정코칭 기법교육 등을 배우고 싶어하는 관내 예비부모 및 유아·청소년을 둔 부모, 조부모</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사업명</th><th>내용</th></tr>
<tr><td>감정코칭
부모교육</td><td>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또는 교육 기관 관계자들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아동들의 감정 수용 방법 교육</td></tr>
<tr><td>부모힐링</td><td>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신뢰감 형성 강화, 건강한 부모의 양육환경 조성</td></tr>
<tr><td>가족캠핑</td><td>가족 게임 및 활동에 참여하여 구성원간 협동심
및 부모 자녀 간 유대관계 향상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td></tr>
<tr><td>양육 상담</td><td>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아동의 기질과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며 양육 방법 제시</td></tr>
<tr><td>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td><td>미디어 사용에 대한 갈등해결 교육 및 새로운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법 교육 등</td></tr>
<tr><td>홈키트
놀이활동</td><td>가정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을 촉진하고 놀이방법을 익히며 유대 관계 증진</td></tr>
<tr><td>:</td><td>:</td></tr>
</table>
</td></tr>
</table>

NO. 50

장난감도서관(소룡점) 운영

아동정책계 장난감도서관(소룡점)	☎454-4163 ☎454-7809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산시 거주 부모 및 군산시 소재 직장인</td></tr>
<tr><td rowspan="4">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 수시</td></tr>
<tr><td>신청방법</td><td>■ 방문 신청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예약신청 후 방문</td></tr>
<tr><td>신청서류</td><td>■ 구비서류
– 등본, 부모신분증(사본)
** 부모 아이의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td></tr>
<tr><td>이용현황</td><td>– 이용시간
· 화~금요일 09:00 ~ 18:00, 토요일 10:00 ~ 15: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대여 및 반납 불가
– 이용요금
· 연회비는 회원가입 시 계좌 입금 및 현장 카드결제
· 연회비 면제대상은 본인에게 유리한 1종으로 선택, 중복혜택 불가

<table>
<tr><th>구분</th><th>연회비</th><th>대여료</th><th>연체비</th><th>파손 및 분실</th></tr>
<tr><td>회원</td><td>20,000원</td><td>1년간 무료</td><td rowspan="2">■ 1일 1점당 500원
■ 연체일수간 대여금지
■ 연체횟수 3회 이상
1개월간 대여 정지</td><td rowspan="2">■ 대여횟수에 따라 장난감의 구매가격 현금 변상
(14일 이내 변상)</td></tr>
<tr><td>면제대상</td><td colspan="2">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
3. 장애인세대(부모 또는 아동)
4. 다문화가족
5. 다자녀세대
6. 국가유공자</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장난감 대여로 군산시 거주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군산시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면제범위 확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td></tr>
</table>

NO. 51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보육지원계 보건복지콜센터	☎454-3222~5 ☎129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내 용</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http://bokjiro.go.kr)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서류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td></tr>
<tr><td colspan="2">처리기한</td><td>■ 소득·재산 무관</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지원금액
<table>
<tr><th>연령(개월)</th><th>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농어촌 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d>0~11</td><td>200천원</td><td>0~11</td><td>200천원</td><td rowspan="3">0~35</td><td rowspan="3">200천원</td></tr>
<tr><td>12~23</td><td>150천원</td><td>12~23</td><td>177천원</td></tr>
<tr><td>24~35</td><td>100천원</td><td>24~35</td><td>156천원</td></tr>
<tr><td rowspan="2">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0천원</td><td>36~47</td><td>129천원</td><td rowspan="2">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0천원</td></tr>
<tr><td>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100천원</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양육수당
– 0~만11개월 : 200천원, 만12~만23개월 : 150천원, 만24개월이상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만35개월 : 200천원, 만36개월 이상 : 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
– 0~만11개월 : 200천원 / 만12~만23개월 : 177천원 / 만24~만35개월 : 156천원 / 만36~만47개월 이상 : 129천원 / 만48개월 이상 : 100천원</td></tr>
</table>

NO. 52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지원계 보건복지콜센터	☎454-3222~5 ☎129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단, 재외국민 출국자, 행방불명자, 국적상실자 제외)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http://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필요서류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만0~2세 영아) 및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다문화 보육) 혼인관계증명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선정기준		■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01.01이후 출생
1세반	'19.01.01~'19.12.31
2세반	'18.01.01~'18.12.31
3세반	'17.01.01~'17.12.31
4세반	'16.01.01~'16.12.31
5세반	'15.01.01~'15.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01.01~'14.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4.01.01~'08.12.31

■ 보육료 지원단가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353,000	353,000	529,500
			만3세반	260,000	260,000	390,000
			만4세반	260,000	260,000	390,000
			만5세반	260,000	260,000	390,000

■ 연장보육료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전자출결시스템상 17시 이후 하원 아동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NO. 53

시간제보육 제공 서비스

보육지원계	☎454-3222~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자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신청	신청기간	■ 사전예약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당일예약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또는 전화신청(☏1661-9361) (당일예약은 전화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은 원칙적으로 급간식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지원기준		■ 제공기관(3개소) : 벧엘어린이집(조촌동), 소룡어린이집(소룡동), 행복이가득한수송어린이집(수송동) ■ 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NO. 54

아동수당

아동복지계	☎454-323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지급 예) 2021년 2월 아동수당은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지난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http://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기타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선정기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 2019. 1월 ~ ※ 아동수당 보편급여 첫 지급 : 4월 25일 (1 ~ 4월분 소급 지급) ■ 대상 요건 – 연령: 만7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충족) – 소득요건: 폐지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포함)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 행방불명자, 거주불명 등록자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중인 경우,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100,000원/월

NO. 55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아동복지계	☎454-323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급여) 아동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선정기준		■ 요보호아동 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아동 중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21년 신규선정 대상 : 2004 ~ 2009년생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계속지원 가능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매칭 지원 ■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 ■ 만18세(만기)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창업지원금 등)에 한하여 지급(해지)가능 ■ 자립사용용도 미 발생 시 만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지급(해지)가능

NO. 56

입양아동 지원

아동복지계	☎454-323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선정기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 양육수당(국비) : 만18세 미만의 국내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만18세 미만 국내 장애입양아동 (고등학교 졸업 전일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50,000원/월/인 ■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 중증 627,000원, 경증 등 551,000원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지원 가능)

NO. 57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계	☎454-3233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288-7770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개월) 등
선정기준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민법상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 250,000원/인/월 ■ 대학입학지원금 : 2,000,000원/인/1회 ■ 자립지원정착금(종결아동대상) : 5,000,000원/인/1회

NO. 58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복지계	☎454-323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td></tr>
<tr><td>신청서류</td><td>■ 산후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빙서류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대상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내용</th><th>지원 단가</th></tr>
<tr><td rowspan="2">가정 내
보호지원</td><td>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td><td>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 아동 생필품비 포함</td></tr>
<tr><td>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td><td>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td></tr>
<tr><td>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td><td>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td><td>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td></tr>
<tr><td>산후조리원
보호 지원</td><td>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td><td>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td></tr>
</table></td></tr>
</table>

NO. 59

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계	☎454-323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http://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선정기준		■ 연령요건: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 대상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방법 : 부식 배달 ■ 학기중 주말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 5,000원/1일 (최대 95일 지원) ■ 연중 조식 지원 : 5,000원/1일 (365일 지원)

NO. 60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드림스타트계	☎454-785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선정기준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지원내용		■ 기본: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 필수: 취학아동 건강검진, 아동 권리교육, 안전 교육, 부모교육,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등 ■ 맞춤: 건강식품 지원, 학습 및 특기적성(영어, 중국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프로그램 운영, 아동교육 울타리사업, 가족여행, 드림문화체험 등

NO. 61

아이맘스 카페운영

드림스타트계 아이맘스 카페	☎454-7852 ☎445-7860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 및 부모, 일반 시민 등 ※ 어린이 장난감 및 도서 대여는 0~7세 아동만 가능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회원 가입서 작성 후 등록)
	신청서류	■ 구비서류 – 회원 가입서, 신분증 등
선정기준		■ 이용대상 :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지원내용		■ **시설 이용 현황** **– 굿 샵(Good Shop) 운영 (1층)** · 중고 의류, 생활용품 등 자율 기부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탁 ⇒ 드림스타트 대상 취약계층 아동 치료비 지원 등에 활용 **– 북 카페 운영 (1층)** · 아이맘스 카페를 방문하는 일반시민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 제공 **–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 (2층)** · 미취학 아동(0~7세)에게 장난감 및 도서 무료 대여 (1인당 최대 장난감 1점 및 도서 3권까지 대여 가능 / 대여기간은 1주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물품 보유현황(2020년 기준) : 장난감 197종 361점, 도서 4,223권 ■ **기타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층)** – 교육중재 프로그램, 동화쿡요리쿡 프로그램, 부모 자조모임 등

NO. 6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드림스타트계	☎454-4188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지역사회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지원내용	채용부분	■ 아동복지교사인원충원이 요구될 시 채용공고 ■ 군산시 거주자로 만 19세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자 및 전공자 우대
	교사유형분야	■ 전일제(주25시간) 및 단시간제(주12시간) ■ 기본분야 – 아동지도 : 기초학습교육, 학교•일상생활교육 – 기초외국어 : 기초외국어지도, 그룹외국어지도 및 활동프로그램 지도 – 독서지도 : 그룹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지도 등 – 예체능지도 : 예체능프로그램지도 및 활동 – 다문화•장애아지도 : 다문화아동, 장애아동지도 및 활동
지원대상 기관선정		■ 관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관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 – 현원이 10명이상 –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기초학습 및 숙제지도, 일상생활지도 및 위생지도 ■ 독서지도 및 외국어지도 ■ 합창 및 악기 (오카리나, 피아노, 첼로등) 지도 ■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만들기등의 미술지도 외 ■ 그림으로 알아가는 정치경제활동 ■ 이용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 자유놀이시간 등에 신체활동,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참여

NO. 63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원

드림스타트계	☎454-4188

구 분		내 용
시설 현황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운영	운영시간	■ 운영시간 : 필수 운영 포함 8시간(주5일) ■ 필수 운영시간 – 학기 중 : 14:00~19:00 – 방학 중 : 12:00~17:00 * 운영시간은 센터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이용방법	■ 시설 입소 후 이용가능
이용대상자		■ 돌봄의 우선아동 – 한부모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외 소득기준 충족 가족) – 다문화가족의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소득기준 충족 가족) – 조손가족의 아동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 장애가족의 아동 및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동거(손)자녀아동으로 이루어진 가족) ■ 일반아동(정원의 50%)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이용가능 연령 충족시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하교 및 중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신청시 필요서류		■ 지역아동센터 내방 및 상담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돌봄구분에 따른 해당 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에 한함)
지원 서비스		■ 기본프로그램 – 안전프로그램 :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 생활프로그램 : 일상생활•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 학습프로그램 : 숙제지도 및 교과학습지도 – 특기적성프로그램 : 예체능활동 및 적성교육 – 성장과 권리프로그램 :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활동 – 문화프로그램 : 공연, 행사참여 및 캠프외 견학 등 – 정서프로그램 : 상담 및 가족지원 등 ■ 특화프로그램 운영 – 각 센터별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NO. 6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계	☎454-324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관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 청 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원종류별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생활· 건강지원: 소득이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특별지원 선정된 청소년 사례관리 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의식주 및 기타 일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건강지원: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에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비 ■ 학업지원: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대, 검정고시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진로상담,지식·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한 비용 (* 만15세 이상 청소년만)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심리검사비 ■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NO. 65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계	☎454-3242
청소년수련관	☎461-4166
청소년문화의집	☎451-7942

구 분		내 용
시설 현황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복지시설: 꽃동산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운영기간	■ 수련시설 : 연중(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 추석) ■ 복지시설 : 연중(24시간 운영) ■ 이용시설 : 연중(휴관일 - 토·일요일, 설, 추석)
	이용방법	■ 시설 방문
운영내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어울림마당 : 연5회(5~10월) – 청소년 동아리활동 : 15개 동아리 지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초·중학생 100명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참여위원회(문화의집), 운영위원회(수련관) – 청소년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 청소년정책 컨퍼런스, 정책캠프 등 –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 각종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풋살, 드론, 난타 교실 등 ■ 꽃동산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1388)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성문화센터 – 청소년 성보호 활동 및 성교육(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 문화활동(아웃리치 및 캠페인 축제 등)

NO. 66

청소년증 지원사업

청소년계	☎454-426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18세이하 청소년이면 학생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신청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지원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신분증 이용가능. ■ 대중교통,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이용 시 청소년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의 증표로 제시할 수 있음. ■ 청소년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가능 ■ 교통카드(레일플러스,캐시비, 원패스 등) 1가지 선택하여 기능추가가능
수령방법		■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등기비용은 신청인부담)
발급기간		■ 2~3주 수요. ■ 발급절차 실시간조회가능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NO. 67

어린이공연장 운영

어린이공연장팀	☎454-574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어린이공연장 시설 대관을 희망하는 자
신청	신청기간	■ 2021. 1. 4.(월) ~ 12. 31.(금)
	신청방법	■ 어린이공연장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http://gunsan.go.kr/event)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군산어린이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 공연계획서 ■ 구비서류 – 부대시설 사용계획 – 사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 대관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대관 허가 – 1순위 : 군산시 또는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공연 – 2순위 : 전 연령을 관람 대사응로 하는 공연 – 3순위 : 작품성 및 스태프의 전문성을 갖춘 순수예술 작품 ■ 어린이공연장 대관 감면 대상 – 군산시 및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 무용·연극·국악·클래식 등의 순수예술 공연(기본사용료의 1/2) –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재학생 출연공연(기본사용료의 1/2)
지원내용		■ 어린이공연장 기본시설 : 공연장, 주차장, 로비 등 ■ 어린이공연장 부대시설 : 음향장비, 조명장비, 냉난방 등(추가 금액 필요)

Ⅳ. 여성가족과

NO. 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정책계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454-3210 ☎1644-6621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내 용</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td></tr>
<tr><td rowspan="2">신청</td><td>신청방법</td><td>■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소득·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한부모(만25세 이상) 및 조손가족
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 이하)
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소관</th><th>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전국
공통</td><td>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td><td>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td></tr>
<tr><td>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td><td>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td></tr>
<tr><td>전북</td><td>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td><td>월동비, 피복비, 학습비(초중고),
교통비, 수학여행비</td></tr>
</table>
※ 항목별 대상 상이 및 중복지급 제한 있음(생계급여 수급자 등)
</td></tr>
</table>

NO. 69

한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정책계	☎454-3210
신광모자원	☎462-7840
신광모자자립원	☎461-2572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입소대상</td><td>■ 신광모자원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신광모자자립원 :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규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td></tr>
<tr><td>입소절차</td><td>
<table>
<tr><td>시설(상담) 및
시·군으로
입소신청</td><td></td><td>입소신청자
상담 후
입소결정</td><td></td><td>입소신청자에
결정통보 및
입소시설로 입소의뢰</td></tr>
<tr><td>입소자</td><td>⇒</td><td>시·군</td><td>⇒</td><td>시·군</td></tr>
</table>
</td></tr>
<tr><td>시설현황</td><td>■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table>
<tr><th colspan="2">유 형</th><th>시설명</th><th>정 원</th><th>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th><th>주 소</th></tr>
<tr><td rowspan="2">모자
가족
복지
시설</td><td>기본생활
지 원</td><td>신광모자원</td><td>24세대</td><td>3년(2년)</td><td>부곡로 19</td></tr>
<tr><td>자립생활
지 원</td><td>신광
모자자립원</td><td>24세대</td><td>3년(2년)</td><td>한밭1길 35</td></tr>
</table>
</td></tr>
<tr><td>지원내용</td><td>■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동절기 김장비 지원 및 가족기능강화캠프 운영</td></tr>
</table>

NO. 7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지원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454-7863 ☎1366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개 요</td><td>■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와 자립 지원</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td></tr>
<tr><td rowspan="2">지원기관</td><td>보호시설</td><td>■ 성가정의집</td></tr>
<tr><td>상담소</td><td>■ 군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보호시설</td><td>■ 입소기간 : 6개월 이내(각 3개월 범위 내 2회 연장 가능)
■ 생계비 지원 (단위 : 원)
<table>
<tr><th>주·부식비(피복비 포함)</th><th>월동대책비</th><th>특별위로금</th></tr>
<tr><td>매월</td><td>연1회(10월)</td><td>연2회(설·추석 전월)</td></tr>
<tr><td>268,052</td><td>40,000</td><td>50,000</td></tr>
</table>
※ 아동교육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등)
■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 1인당 500만원
■ 직업훈련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등 지원</td></tr>
<tr><td>상담소</td><td>■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 가정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 의료·수사·법률지원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 가정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예방 홍보</td></tr>
</table>

NO. 71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지원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454-7863 ☎1366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개 요</td><td>■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성폭력피해자 및 가정구성원</td></tr>
<tr><td rowspan="2">지원기관</td><td>보호시설</td><td>■ 은혜의 쉼터</td></tr>
<tr><td>상담소</td><td>■ 군산성폭력상담소</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보호시설</td><td>■ 입소기간 : 1년(1년 6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생계비 지원 (단위 : 원)
<table>
<tr><th>주·부식비(피복비 포함)</th><th>월동대책비</th><th>특별위로금</th></tr>
<tr><td>매월</td><td>연1회(10월)</td><td>연2회(설·추석 전월)</td></tr>
<tr><td>268,052</td><td>40,000</td><td>50,000</td></tr>
</table>
■ 의료 및 간병비 지원
<table>
<tr><th>항목</th><th>의료비</th><th>간병비</th><th>돌봄비</th></tr>
<tr><td>대상</td><td>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td><td>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td><td>13세 미만 피해아동·피해자의 13세 미만 형제·자매·자녀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 없이 1~3등급) 등</td></tr>
<tr><td>기준</td><td>♦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 원칙
♦ 백만원(누적금액) 이상 지원시 주치의 소견 및 내부회의 등 거쳐 지원 여부 결정</td><td>♦ 최대 1개월
♦ 1인당 3백만원 이내</td><td>♦ 6개월(12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 1인당 3백만원 이내 (최대 9백만원까지 가능)</td></tr>
</table></td></tr>
<tr><td>상담소</td><td>■ 성폭력피해·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 의료·법률지원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제공
■ 성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예방 홍보</td></tr>
</table>

NO. 72

여성사회대학 운영

여성지원계	☎454-786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일반 여성
신청	신청기간	■ ┌ 상반기 과정 : 3월 중 ├ 하반기 과정 : 8월 중 └ 겨울학기 과정 : 11월 중
	신청방법	■ 군산시 여성교육장(공설시장 3층) 전화 접수(☎ 454-7864) - 선착순 모집 원칙,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운영 프로그램		■ 개설강좌 : 4개분야 21개 강좌 - 직업훈련분야 : 패션연출양재, 의류리폼,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1인미디어(영상제작&편집), 전통혼례음식만들기 - 정보화교육분야 : 문서기초 & 인터넷 활용 - 생활문화분야 : 집밥!O선생, 전통차예절지도사, 셀프헤어 - 교양교육분야 : 한국화, 사군자, 서예, 포크기타(초급. 중급), 민요, 교양한문, 중국어, 생활영어(A반, B반), 노래교실
수강료		■ 금 액 : 32,000원(상반기 기준) - 8시간당 5,000원 기준으로 강좌별 운영시간 일부 상이 ■ 징수근거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 수강료 납부계좌 : 농협 534-01-013573 (예금주 : 군산시장)

NO. 73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454-3112 ☎451-1366

구 분	내 용
위치	■ 군산시 삼화안길 9 (문화동)
설치목적	■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개발, 육성 및 효율적 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참여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 포털사이트 통한 봉사활동 신청 ⇒ 봉사활동 ⇒ 실적인증
자원봉사 신청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을 이용한 개인봉사 신청 ■ 수요처를 통한 자원봉사 신청
자원봉사 실적인증	■ 센터등록 수요처에서 봉사활동 했을 경우 - 해당 기관 담당자가 실적등록 ■ 센터등록 수요처가 아닌 곳에서 봉사활동 했을 경우 ① 사전 (최소 1~2주 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② 봉사활동 보고서(사진 1~2장 첨부) 작성 후 센터 팩스(063-451-6365) 또는 메일(doumi1365@hanmail.net) 제출 ③ 센터 담당자 실적등록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의 재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제공 ■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를 통해 봉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NO. 74

사랑의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

자원봉사계	☎454-311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 중증장애인 등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신청
	신청서류	■ 읍 · 면 · 동 담당자에 의한 조사표
선정기준		■ 저소득층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이동목욕시설이 미비하여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사랑의 이동 목욕차량 운영 – 운영기간 : 매주 월~금(주5일) ※ 공휴일 및 법정휴일 제외 – 장 소 : 수혜대상 가정 – 내 용 : 이동목욕차량 이용 대상자별 순회 방문목욕 지원 – 수혜대상 : 월 26~30명 (1인 월 2~3회) – 봉사인원 : 1일 4~5명(봉사자 3~4, 운전 1) – 절 차 수혜대상 모집 (수시) / 신청⇒대상자 확인 ⇒시 현지조사 ⇨ 월별 계획 수립 / 봉사단체, 수혜자 연계 ⇨ 이동목욕 지원 / 방문서비스

NO. 75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

자원봉사계	☎454-311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신청
	신청서류	■ 읍 · 면 · 동 담당자에 의한 조사표
선정기준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밑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수혜대상을 초과한 경우 선착순 대기)
지원내용		■ 밑반찬 지원사업 – 운영기간 : 매월 1회(두번째 화요일) – 장 소 :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 수혜대상 : 월 165세대 – 내 용 : 밑반찬을 조리하여 수혜가정 방문 전달 – 봉사인원 · 요리봉사 : 월 40여명(여성자원봉사회) · 배달봉사 : 월 40여명(관내 봉사단체, 개인봉사자) – 절 차

수혜대상 모집 (수시)	⇨	재료구입 및 조리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수혜가정 전달
읍면동 신청 ⇒ 시 대상자 선정		시,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밑반찬 배달 및 안부확인)

NO. 76

군산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다문화지원계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54-3253 ☎443-5300/005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민 누구나
신청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 언론사,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현수막, 육아카페, 캠페인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 ■ 가족상담신청(개인, 부부, 아동, 가족상담) - 063)443-5300/0053, 070)4469-2697로 전화예약 후 방문 ■ 다문화가족은 센터로 내방하여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사업목적		■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 기능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사회의 문화 및 건강성 증진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주요사업		■ 가족관계 : 부부교육, 부모역할교육 및 상담, 다문화자녀성장지원(청소년), 이혼 전·후가족, 찾아가는 가족,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지원사업, ■ 가족돌봄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가족생활 :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 및 학력지원 ■ 지역공동체 : 가족사랑의날, 가족봉사단, 다이음사업 및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문화어울림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돌봄품앗이)
지원내용		■ 가족관계 - 가족상담 전문가의 비밀보장 및 무료상담, 각종 심리검사 - 부부·부모역할교육, 이혼 전·후 가족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프로그램, 다문화자녀성장지원(청소년) ■ 가족돌봄 : 다문화가족방문사업(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사례관리, 언어발달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 가족생활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취업지원, 통번역서비스(중국,베트남) ■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초등돌봄 및 품앗이)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문화어울림지원사업

NO. 7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443-5300 ☎443-251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맞벌이,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신청기간	■ 2021. 1. 1. ~ 2021. 12. 31.(상시)
	신청방법	■ 정부지원 가구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신청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정부미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서류 절차 생략
선정기준		■ 정부지원 대상 :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5,622,899원	6,274,345원
나형	120% 이하	4,780,740원	5,851,548원	6,908,848원	7,954,324원	8,996,638원	10,038,952원
다형	150% 이하	5,975,925원	7,314,435원	8,636,060원	9,942,905원	11,245,797원	12,548,690원

지원내용	■ 시간제서비스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기본형 기준 정부지원율 ① A형(2014.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② B형(2013.12.31. 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영아종일제 서비스 : (가~다형)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율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NO. 78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금 지원

가족다문화지원계	☎454-325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군산시에 출생신고 한 가정(부 또는 모)</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출생 후 1년 미만</td></tr>
<tr><td>신청방법</td><td>■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통합신청서 작성</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셋째아 육아용품 지원 :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또는 신생아용품(차량 보조시트 기소유시) 구매 영수증</td></tr>
<tr><td colspan="2">지원조건</td><td>군산시에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2019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단, 출생일 전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가능
(출생 후 1년 이상이 되면 신청불가)</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출산지원금
<table>
<tr><th>출산순서</th><th>지급액</th><th>지원시기</th></tr>
<tr><td>첫째아</td><td>30만원</td><td>일시금</td></tr>
<tr><td>둘째아</td><td>100만원</td><td>일시금</td></tr>
<tr><td>셋째아</td><td>300만원</td><td>-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td></tr>
<tr><td>넷째아</td><td>500만원</td><td>-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td></tr>
<tr><td>다섯째아 이상</td><td>1천만원</td><td>-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 1년 경과 시마다 150만원씩 4년간 지급</td></tr>
</table>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 출산축하금 : 2019년 이후 출생아 한명당 3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 지급(출산지원금과 별도)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 카시트지원(25만원상당)
* 차량 미소유나 카시트 기소유시 육아용품으로 대체 가능</td></tr>
</table>

NO. 79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3-5300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466-7337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초등돌봄 :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1~3학년(15명)으로 맞벌이 자녀 ■ 영유아 품앗이 : 품앗이 활동을 원하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품앗이 형성 후 현재 활동 중인 품앗이 그룹
신청	신청기간	■ 초등돌봄 : 2월 초 모집 (1년 운영제: 3월~ 다음 해 2월) ■ 영유아 품앗이 : 연중 상시, 그룹형성 (3가정 이상)후 방문 신청 개인 신청 하신 분은 그룹 연계 가능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신청서류	■ 공통서식 : 가입신청서, 이용자 카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 처치 및 귀가 동의서, 이용자 수칙 동의서 등 ■ 맞벌이 확인 구비서류 (초등돌봄)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확인서, 수료증 등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부부공동인 경우 확인 가능해야 함)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및 보호자 중 1인만 등록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 농업 종사자나 부부공동 자영업자인 경우 본 기관 근로확인서로 대체
운영 프로그램		■ 초등돌봄 – 방과후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 상시프로그램 (악기합주, 토탈 공예, 전래놀이, 독후 활동, 과학탐구, 종이접기, 클레이,등) – 과제수행 및 학습 지도 – 부모 소통 및 교류 공간 제공 – 부모 중심 운영위원회의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영유아 품앗이 – 자녀돌봄 품앗이 연계 및 지원 – 부모·자녀양육프로그램 제공 – 돌봄 품앗이 나눔 장터 및 다과 – 품앗이 활동가 양성 교육 – 양육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 제공 - 품앗이 전체 모임
이용방법		■ 초등돌봄 월~금 (학기 중: 13:00~19:00, 방학 중 09:00~19:00) 돌봄서비스와 상시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및 품앗이 그룹 월~금 (10:00~12:00) 놀이 및 활동공간으로 이용

Ⅴ. 주택행정과(주거복지)

NO. 80

주거급여

주거복지계	☎454-4242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http://bokjiro.go.kr)</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계약서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단위 : 천원)
<table><tr><td>가구원수</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r><tr><td>소득인정액</td><td>822</td><td>1,389</td><td>1,792</td><td>2,194</td><td>2,590</td></tr></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021년 임차비용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table><tr><td>가구원수</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r><tr><td>최고지급액</td><td>163</td><td>183</td><td>217</td><td>253</td><td>261</td></tr></table>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 (경보수·중보수·대보수)</td></tr>
</table>

NO. 8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복지계	☎454-4242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전입신고 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bokjiro.go.kr)</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table>
<tr><th rowspan="2">가구수</th><th colspan="4">지원상한액(원/월)</th><th rowspan="2">산정방식</th></tr>
<tr><th>1급지
(서울)</th><th>2급지
(경기,인천)</th><th>3급지
(광역시,세종)</th><th>4급지
(그외)</th></tr>
<tr><td>1인</td><td>310,000</td><td>239,000</td><td>190,000</td><td>163,000</td><td rowspan="6">▶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
(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임대료-자기부담금
(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청년가구원수 비율×30%</td></tr>
<tr><td>2인</td><td>348,000</td><td>268,000</td><td>212,000</td><td>183,000</td></tr>
<tr><td>3인</td><td>414,000</td><td>320,000</td><td>254,000</td><td>217,000</td></tr>
<tr><td>4인</td><td>480,000</td><td>371,000</td><td>294,000</td><td>253,000</td></tr>
<tr><td>5인</td><td>497,000</td><td>383,000</td><td>303,000</td><td>261,000</td></tr>
<tr><td>6인</td><td>588,000</td><td>453,000</td><td>359,000</td><td>309,000</td></tr>
</table>
</td></tr>
</table>

NO. 82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주거복지계	☎454-424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 장기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선정기준		■ 대상주택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 매입임대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개발공사 및 시소유 임대주택 ■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호당 690만원 한도 (계약금은 본인부담)

NO. 83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주거복지계	☎454-4243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
신청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 참고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동의서 등
선정기준		■ 사업 지원 희망자 중 우선순위 추천에 의거 선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중 주택 소유자로부터 개보수 동의를 받은 주택 – 차상위등 저소득계층으로 자가가구,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로부터 개보수 동의를 받은 주택 – 기타 긴급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주택
지원내용		■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안전·건강·위생·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구 조: 벽체 및 지붕 단열 공사, 담장 등 수장공사: 장판, 도배, 도장 공사 위생설비: 화장실 및 주방 공사, 배관자재 등 교체 기 타: 창호, 타일,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증·개축 및 대수선 제외

NO. 8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거복지계	☎454-4241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농어촌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등록 장애인</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사업시행 공고 참고</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td></tr>
<tr><td>신청서류</td><td>■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동의서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천원)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r>
<tr><td>소득인정액</td><td>913</td><td>1,544</td><td>1,991</td><td>2,438</td><td>2,878</td></tr>
</table>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 경쟁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 가구원중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등</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가구당 380만원 이내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장애종류 및 등급, 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개설할 편의시설 선정</td></tr>
</table>

NO. 85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복지계	☎454-424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신청	신청기간	■ 연중(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전입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관계 및 주소이력 표기)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 신청제한 대상자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분리한 독거노인 – 동일 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이사비 지원

NO. 86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대상자 추천

주거복지계	☎454-4242

구 분		내 용
추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지원받은지 3년 이내 가구 지원불가
신청	신청기간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시행 공고 참고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절차	읍·면·동: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 기초지자체: 취합 및 신청 (사업관리시스템) ⇨ 진단·시공업체: 신청가구 현장방문, 지원내용 결정 ⇨ 한국에너지재단: 적격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추천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 – 가구당 평균 200만원 이내 ■ **(냉방기 보급)** –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한 에어컨(창호일체형, 벽걸이)등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 가구당 30만원

Ⅵ. 보 건

NO. 87

영양플러스사업

시민건강계	☎454-3280~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 전액무료 보충식품 공급 ■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신청	신청기간	■ 2회(5월,10월)/년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직접 방문(서류지참) ※ 신청대상자가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 동반해야 함
	신청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④임신확인서,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⑤가족관계 증명서 (미혼·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선정기준		1. ■ 가구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함 3.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건강보험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대상 자격을 부여함 ※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가구, 혼합(직장+지역) 가구 세 유형에 대해, 가구원수 별로 기준치를 제시함 4.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 (단위 : 만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5. 소득인정액	247	318	390	460	530

6. 지원내용	7. ■ 보충식품지원 (2회/월) 8. ■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가능한 월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 타 사업 및 군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연계 9. ■ 조리실습(2회/월) -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만들기(영·유아, 임신·출산·수유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조리실습 - 보충식품을 이용한 영양만점 간식 만들기 등 10. ■ 가정방문(10가구/월) : 보충식품보관·이용에 대한 교육 및 기타 맞춤형 식생활 관리 교육 실시

NO. 88

저소득층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방문보건계 노인나눔의료재단	☎460-3285 ☎02-711-659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신청	신청기간	■ 연중(단,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 (대리인도 신청가능)
	신청서류	■ 구비서류 – 무릎 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진료소견서 (의사진단서) – 확인증명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신청절차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공적자격 여부 및 진단서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나눔의료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노인나눔의료재단 – 대상자여부 판단후 10일내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 수술비 지원 :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납부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수술관련 비급여 일부 포함), 한쪽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수술비 지원제외 – 간병비,상급병실료,보호자식대,무릎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NO. 89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계	☎460-3285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사업내용	1. 방문 건강지킴이 ■ 사업인력 : 읍 .면. 동 방문보건 담당자 37명 ■ 운영 방법 : 방문인력이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보건소 내. 외 자원 연계 등 실시 ■ 사업체계 : 방문 요구도에 따른 군 분류 및 방문주기

• 집중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 정기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 자기역량지원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2. 집단시설 건강관리

■ 기 간: 연중
■ 대 상: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 내 용
- 집단시설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 황사, 폭염, 한파대비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NO. 9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문보건계	☎460-3286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지역사회 법적 등록 재가 장애인 ■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 장애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보건계) 전화 및 방문
사업내용		■ 퇴원관리 상담활동 – 대 상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연계된 퇴원 후 예비장애인 – 내 용 : 4주차 조기적응 프로그램 서비스

1주	2주	3주	4주
건강한 일상 계획하기	장애 이해하기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 활용하기	일상생활관리
재활운동	재활운동	재활운동	재활운동

■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
– 대 상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재가장애인
– 운 영 : 사전예약제(6개월마다 신규 대상자 교체)
– 내 용 : 관절운동, 근력증진, 감각운동 등

■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재활치료
– 대 상 :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 재가장애인
– 내 용 : 일상생활 동작 관리, 관절구축 예방운동, 자가운동교육 등

NO. 9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방문보건계	☎460-3286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관내 30세 이상 시민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보건계) 전화 및 방문
사업내용		■ 혈관튼튼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 기 간 : 3~11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10:00~11:30(7월 제외) –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내 용 · 만성질환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및 건강 상담 · 질환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법 교육 · 질환별 식이요법 건강강좌, 낙상예방교육 등 ■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운영 – 장 소 :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 읍면동 등 시민 다중 이용 장소 – 내 용 : 고혈압·당뇨의 이해 및 개념, 뇌졸중·심근경색증 바로알기 교육

NO. 92

난임부부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39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난임진단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년 이상 혼인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table>
<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rowspan="2">기준중위소득(180%)
(단위 : 원)</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th></tr>
<tr><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h>혼합</th></tr>
<tr><td>2인</td><td>5,559,000</td><td>191,093</td><td>200,980</td><td>194,212</td></tr>
<tr><td>3인</td><td>7,171,000</td><td>246,992</td><td>271,376</td><td>252,295</td></tr>
<tr><td>4인</td><td>8,777,000</td><td>308,297</td><td>341,915</td><td>321,769</td></tr>
<tr><td>5인</td><td>10,363,000</td><td>380,152</td><td>420,252</td><td>414,255</td></tr>
<tr><td>6인</td><td>11,931,000</td><td>414,255</td><td>456,308</td><td>449,388</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지원상한액
<table>
<tr><th colspan="3">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th><th>만 44세 이하</th><th>만 45세 이상</th></tr>
<tr><td rowspan="4">체외수정</td><td rowspan="2">신선배아</td><td>1~4회</td><td>110만원</td><td rowspan="2">90만원</td></tr>
<tr><td>5~7회</td><td>90만원</td></tr>
<tr><td rowspan="2">동결배아</td><td>1~3회</td><td>50만원</td><td rowspan="2">40만원</td></tr>
<tr><td>4, 5회</td><td>40만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인공수정</td><td>1~3회</td><td>30만원</td><td rowspan="2">20만원</td></tr>
<tr><td>4, 5회</td><td>20만원</td></tr>
</table></td></tr>
</table>

NO. 93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68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출산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동의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
지원내용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인당 최대 20만원/지정의료기관 1개소)

NO. 94

산후 조리비용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68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선정기준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후 조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 100만원 - 그 외 산모 : 50만원

NO. 9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계	☎460-3239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td></tr>
<tr><td>신청방법</td><td>■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일자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table>
<tr><th>질환명</th><th>질환코드</th><th>한글명</th><th>지원기간</th></tr>
<tr><td>1. 조기 진통</td><td>O60</td><td>조기진통 및 분만</td><td>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6주6일까지)</td></tr>
<tr><td rowspan="2">2. 분만관련 출혈</td><td>O67</td><td>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td><td rowspan="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td></tr>
<tr><td>O72</td><td>분만후 출혈</td></tr>
<tr><td rowspan="3">3. 중증 임신중독증</td><td>O11</td><td>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td></tr>
<tr><td>O14</td><td>전자간</td></tr>
<tr><td>O15</td><td>자간</td></tr>
<tr><td>4. 양막의 조기파열</td><td>O42</td><td>양막의 조기파열</td><td>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td></tr>
<tr><td>5. 태반조기박리</td><td>O45</td><td>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td><td rowspan="6">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td></tr>
<tr><td rowspan="2">6. 전치태반</td><td>O44</td><td>전치태반</td></tr>
<tr><td>O69.4</td><td>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td></tr>
<tr><td>7. 절박 유산</td><td>O20.0</td><td>절박유산</td></tr>
<tr><td>8. 양수과다증</td><td>O40</td><td>양수과다증</td></tr>
<tr><td>9. 양수과소증</td><td>O41.0</td><td>양수과소증</td></tr>
<tr><td>10. 분만전 출혈</td><td>O46</td><td>분만전 출혈</td><td rowspan="2">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td></tr>
<tr><td>11. 자궁경부무력증</td><td>O34.3</td><td>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 rowspan="3">12. 고혈압</td><td>O10</td><td>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td><td rowspan="18">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td></tr>
<tr><td>O13</td><td>임신[임신-유발]고혈압</td></tr>
<tr><td>O16</td><td>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td></tr>
<tr><td rowspan="2">13. 다태임신</td><td>O30</td><td>다태임신</td></tr>
<tr><td>O31</td><td>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td></tr>
<tr><td>14. 당뇨병</td><td>O24</td><td>임신중 당뇨병</td></tr>
<tr><td>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td><td>O21.1</td><td>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td></tr>
<tr><td>16. 신질환</td><td>N00-N23*</td><td>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td></tr>
<tr><td>17. 심부전</td><td>I00-I52*</td><td>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td></tr>
<tr><td>18. 자궁내 성장제한</td><td>O36.5</td><td>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 rowspan="6">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td><td>O23.5</td><td>임신중 생식관의 감염</td></tr>
<tr><td>O34.0</td><td>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O34.1</td><td>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O34.4</td><td>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O34.8</td><td>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td></tr>
<tr><td>O41.1</td><td>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td></tr>
</table>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td></tr>
</table>

NO. 96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4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출생신고가 완료된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 중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 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군산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 구비서류 – (기저귀)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등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선정기준		■ (기저귀) 영아(0~24개월)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자격 보유 확인, 다자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확인 ■ (조제분유)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이면서 산모의 사망·특정 질병 해당 여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 산모의 의식불명 여부 등을 확인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64,000원/월 ■ 조제분유 지원 : 86,000원/월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50,000원/월

NO. 97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45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예비·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여성), 초산 전 가임기 여성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출산부</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 중</td></tr>
<tr><td>신청방법</td><td>■ 군산시 보건소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예비맘 엽산제
– 공통서식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중 1부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초산 전 가임기 여성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출산부</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영양제 지원 내용
<table>
<tr><th>구분</th><th>대상</th><th>지원내용</th><th>구비서류</th></tr>
<tr><td>예비맘
엽산제</td><td>(신규)
예비·신혼부부,
초산 전 가임기
여성</td><td>3개월분</td><td>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중 1부</td></tr>
<tr><td>엽산제</td><td>임신 12주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td><td>최대 3개월분</td><td>산모수첩</td></tr>
<tr><td>철분제</td><td>임신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td><td>최대 5개월분</td><td>산모수첩</td></tr>
<tr><td>영양제</td><td>임신부 혹은 출산
60일 이내 출산부</td><td>2개월분</td><td>산모수첩
출산부의 경우 아가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능</td></tr>
</table></td></tr>
</table>

NO. 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4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군산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기중중위소득 140%이하(최대) 출산가정
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군산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 구비서류 – 신분증(산모본인) – 조회불가능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등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선정기준		■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적용기준 및 본인부담금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및 군산시 보건소 방문 확인)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관리를 지원

NO. 9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45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colspan="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상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colspan="3">■ 올해 2~7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3">■ 군산시 보건소 방문접수
– 지정 검사기관 이용하는 경우: 확인서 제출 후 검사
– 별도 검사기관 이용하는 경우: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 후 청구 요청</td></tr>
<tr><td>신청서류</td><td colspan="3">■ 공통서식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기재)
■ 구비서류
<table>
<tr><td rowspan="2">① 자격 및 소득확인</td><td>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td><td>의료급여증 혹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td></tr>
<tr><td>건강보험료 50%이하</td><td>검진시작일 직전연도 11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td></tr>
<tr><td rowspan="2">② 검사 후 제출서류</td><td>지정 검사기관</td><td rowspan="2">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검사별 세부 내역 금액 필요),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입금통장 사본</td></tr>
<tr><td>별도 검사기관</td></tr>
</table></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colspan="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50% 판정기준
<table>
<tr><th>검진기간 시작일</th><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r>
<tr><td>2019년도</td><td>115,000원 이하</td><td>78,500원 이하</td></tr>
<tr><td>2020년도</td><td>122,000원 이하</td><td>86,000원 이하</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3">■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table>
<tr><td>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td><td>최대 40만원</td></tr>
<tr><td>건강보험료 50%이하</td><td>최대 20만원</td></tr>
</table>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td></tr>
</table>

NO. 100

선천성 난청검사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계	☎460-3245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colspan="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colspan="3">■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3">■ 군산시 보건소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colspan="3">■ 공통서식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table>
<tr><td rowspan="2">① 자격 및 소득확인</td><td>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td><td>의료급여증 혹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td></tr>
<tr><td>건강보험료 180%이하</td><td>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td></tr>
<tr><td>② 검사 후 제출서류</td><td colspan="2">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기재)</td></tr>
<tr><td>③ 해당자</td><td colspan="2">–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td></tr>
</table></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
및
지원내용</td><td colspan="3">■ 공통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산정 활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검사코드 및 검사명: FZ735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6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확진검사: F6400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F6410 청성지속반응(ASSR)
– 그 외 지원: 이음향방사검사 F6382 변조(DPAOE), F6383 크릭유발(TEOAE),
F6361 임피던스청력검사</td></tr>
</table>

NO. 10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8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소아암지원: 만 18세 미만인 자
■ 성인암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로서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진된 암환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구비서류: 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 :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기준에 적합한 자
– 성인암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적합한 자
*2021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소아 암환자</th><th colspan="3">성인 암환자</th></tr>
<tr><th>의료급여수급자</th><th>건강보험가입자</th><th>폐암 환자</th></tr>
<tr><td>선정 기준</td><td>●건보: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 당연 선정</td><td>●당연 선정</td><td>●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td><td>●건보: 1월 건강보험료
●의급: 당연 선정</td></tr>
<tr><td>지원 암종</td><td>●전체 암종</td><td>●전체 암종</td><td>●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td><td>●원발성 폐암(C34)</td></tr>
<tr><td>지원 기간</td><td>●만18세까지 연속 지원</td><td>●연속 최대 3년</td><td>●연속 최대 3년</td><td>●연속 최대 3년</td></tr>
<tr><td>지원 금액</td><td>●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td><td>●급여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td><td>●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td><td>●건강보험가입자: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td></tr>
<tr><td>지원 항목</td><td>●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td><td>●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td><td>●급여본인부담금</td><td>●건강보험가입자: 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td></tr>
</table>
※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을 공제 후 지원
</td></tr>
</table>

NO. 10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계	☎460-3268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1,110개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보건소 방문접수</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양가구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소득재산 기준액 적합자
※ 2021년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천원)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소득</td><td>2,193</td><td>3,705</td><td>4,780</td><td>5,851</td><td>6,908</td><td>7,954</td></tr>
<tr><td>재산</td><td>154,599</td><td>190,865</td><td>216,646</td><td>242,324</td><td>267,679</td><td>292,751</td></tr>
</table>
※ 2021년 부양가구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천원)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소득</td><td>3,655</td><td>6,176</td><td>7,967</td><td>9,752</td><td>11,514</td><td>13,257</td></tr>
<tr><td>재산</td><td>257,665</td><td>318,109</td><td>361,076</td><td>403,874</td><td>446,132</td><td>487,918</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td></tr>
</table>

NO. 103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460-3277 ☎460-3211~2 ☎1899-9988(24시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신청	검진기간	■ 연중
	검진방법	■ 군산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검진내용		■ 지원내용 – 치매선별검사 : 60세 이상 노인 치매 미진단자(무료) – 치매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무료진단검사실시 – 치매감별검사 : 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 필요자』 협약병원 의뢰·실시(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검사비 지원*) ***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지원**

■ 추진절차

검진단계	검진내용	검진장소
1단계	❖ 선별검사(CIST) (정상-2년 후 선별검사, 인지저하자-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무 료)**
2단계	❖ 진단검사(SNSB-Ⅱ, SNSB-C, LICA)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 **(무 료)**
3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비용 지원)**

■ 우리시 협약병원(감별검사)
–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차병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단검사 실시 가능. 단, 치매검사비 지원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실시

■ 소득기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으로 판정
※ 중복지원 해당자(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는 제외

< 2021년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 가입자	75,224 (83,890)	128,342 (143,127)	165,968 (185,088)	203,558 (227,008)	237,681 (265,062)	278,094 (310,130)	321,769 (358,837)	354,781 (395,652)
지역 가입자	30,663 (34,195)	117,560 (131,103)	168,444 (187,849)	216,474 (241,412)	259,446 (289,334)	309,041 (344,643)	356,168 (397,199)	393,994 (439,38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 감별검사비지원(혈액검사, 뇌영상촬영(MRI, CT촬영) 등) ■ 지원금액 : 8만원/11만원 상한 내 지원(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자)

NO. 10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460-3277 ☎460-3211~2 ☎1899-9988(24시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인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약 복용자
(※단, 기중 중위소득 120% 이하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군산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td></tr>
<tr><td>신청서류</td><td>■ 공통서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및 소견서(CDR또는 GDS 점수기록, 최초진단일, 질병코드)
– 치매약처방전, 환자명의통장사본(본인 통장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선정기준 : 연령 · 진단 · 치료 · 소득 기준에 적합한 자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
– 진단기준 : 치매진단자(F00~F03,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투약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보다 이하이면 충족으로 판정
※ 중복지원 해당자(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는 제외

<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td>직장
가입자</td><td>75,224
(83,890)</td><td>128,342
(143,127)</td><td>165,968
(185,088)</td><td>203,558
(227,008)</td><td>237,681
(265,062)</td><td>278,094
(310,130)</td><td>321,769
(358,837)</td><td>354,781
(395,652)</td></tr>
<tr><td>지역
가입자</td><td>30,663
(34,195)</td><td>117,560
(131,103)</td><td>168,444
(187,849)</td><td>216,474
(241,412)</td><td>259,446
(289,334)</td><td>309,041
(344,643)</td><td>356,168
(397,199)</td><td>393,994
(439,382)</td></tr>
</table>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
및
절차</td><td>■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발생한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지급 절차 흐름도】
<table>
<tr><td>대상자
지원
신청</td><td>⇨</td><td>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td><td>⇨</td><td>대상자
치매치료관리
(병원/약국)</td><td>⇨</td><td>건보공단
비용
지급</td></tr>
</table></td></tr>
</table>

NO. 105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치매안심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460-3277 ☎460-3211~2 ☎1899-9988(24시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 가족이 없으며, 소득수준 충족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군산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td></tr>
<tr><td>구비서류</td><td>■ 공통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td></tr>
<tr><td colspan="2">사업내용</td><td>■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성년후견제도
–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유형 : 성년후견(능력결여), 한정후견(능력부족), 특정후견(일시후원)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
– 후견인의 임무 :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대행 등
※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table>
<tr><th>구 분</th><th>사 업 내 용</th></tr>
<tr><td>피후견인
자격
(후견대상자)</td><td>○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td></tr>
<tr><td>공공후견인
자격</td><td>○ 누구나 지원 가능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공공후견인
선발</td><td>○ 광역치매센터에서 공고 등을 통해 모집</td></tr>
<tr><td>공공후견인
보수지급</td><td>○ 활동비 피후견인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 지급(月기준)</td></tr>
</table></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이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td></tr>
</table>

NO. 106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460-3277 ☎460-3211~2 ☎1899-9988(24시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치매노인실종예방 :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자 만 60세 이상 누구나 ■ 조호물품지원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군산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 공통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조호물품신청서, 실종예방신청서
지원내용		■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무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배회 인식표 지급(1인당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사용방법 : 인식표 수령 후 의류에 다리미를 이용하여 전사 인쇄하여 실종 시 옷에 부착된 인식표로 신원확인하여 가정복귀 지원 – 지문 등 사전등록(무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경찰서 방문(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돌봄)하는 자 ※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기저귀류, 물티슈 등 위생소모품 등 지원 ※ 물품 내용 및 수량은 사업 지침(계획)에 따라 매년 변경 ■ 치매환자 사례관리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환자 중 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전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로 사례관리 회의에서 사례관리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월 1회 방문 또는 전화로 고충상담, 투약지도

NO. 107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등 운영

치매안심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460-3202 ☎460-3211~2 ☎1899-9988(24시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치매환자쉼터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초기 치매환자 ■ 치매가족지원 : 치매환자 가족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군산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서류	■ 공통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치매진단서, 신분증
운영내용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장 소 : 군산시보건소(3층 회의실) – 대 상 : 경증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 – 운 영 : 주 2일(월,수/화,목), 3시간 (13:30~16:30) 운영 – 내 용 · 뇌운동 프로그램(인지훈련매뉴얼, 두뇌건강 놀이책 등) · 인지자극 프로그램(작업, 원예, 미술, 음악, 향기치료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영화감상, 교구활동 등) · 신체활동 프로그램(댄스 등) ■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 소 : 군산시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 – 운 영 · 가족교실(헤아림) : 주 2회 8회기 운영(8월 예정) · 힐링프로그램 : 격주 1회, 7회기 운영(9월~11월 예정) – 내 용 : 쉼, 정보공유,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 ■ **인지강화교실 운영** – 장 소 : 서부건강지원센터 – 대 상 : 인지저하자 및 치매고위험군 – 운 영 : 반기별 운영, 주2일(화, 목), 3시간 (14:00~17:00)운영 – 내 용 : 인지훈련매뉴얼, 스마트기억팡팡, 미술, 원예, 음악 등 ■ **치매예방교실 운영** – 장 소 : 복지관(4개소), 경로당(16개소) 운영 – 대 상 : 만 60세 이상 정상군 – 운 영 : 상·하반기운영, 주1일 1~2시간 운영 – 내 용 : 치매예방3.3.3교육, 두뇌튼튼체조, 인지자극 프로그램(미술,작업, 원예 등) 운영

NO. 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계	☎460-3209
정신건강복지센터	☎451-0363
마음건강클리닉	☎445-9191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군산시민 및 정신질환자</td></tr>
<tr><td rowspan="2">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클리닉 전화(445-9191) 및 방문
■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자살예방전화(1393)</td></tr>
<tr><td colspan="2">운영내용</td><td>■ 중증 정신질환자관리사업
- 중증 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
- 주2회 주간재활·직업재활프로그램
- 정신건강 위기개입서비스
■ 자살예방사업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자살예방
상담</td><td>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우울·스트레스·자살예방 상담 제공</td></tr>
<tr><td>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td><td>· 대상: 자살시도자, 재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이하인 자
· 지원내용: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비 등 1인 100만원이내 지원</td></tr>
<tr><td>정신건강
심리치료
의료비지원</td><td>· 대상: 정신건강고위험군으로 중위소득140%이하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1인 30만원 이내 협약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치료비 지원</td></tr>
</table>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 등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대상자 상담 및 사례관리</td></tr>
</table>

NO. 109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정신건강계	☎460-3209
정신건강복지센터	☎451-0363
마음건강클리닉	☎445-9191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받은 정신질환자</td></tr>
<tr><td rowspan="3">신청</td><td>신청기간</td><td>■ 연중</td></tr>
<tr><td>신청방법</td><td>■ 군산시보건소 정신건강계 방문 혹은 치료 의료기관 청구</td></tr>
<tr><td>신청서류</td><td>■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정신질환치료비지원신청서, 최초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만 해당)</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지급절차
-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는 관할 보건소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 종류 및 내용
<table>
<tr><th>종 류</th><th>내 용</th><th>선정기준</th></tr>
<tr><td>응급입원</td><td>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td><td>소득기준 무관</td></tr>
<tr><td>행정입원</td><td>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td><td>소득기준 무관</td></tr>
<tr><td>발병 초기 정신질환</td><td>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td><td>중위소득 80%</td></tr>
<tr><td>외래치료지원</td><td>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td><td>중위소득 80%</td></tr>
</table></td></tr>
</table>

NO. 110

국가 필수 예방접종

모자보건계 질병관리청 콜센터	☎460-3244 ☎139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 ■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방법	■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항목	■ 보건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독감, 폐렴구균) – 고위험예방접종(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 기타 선택예방접종(성인B형간염, A형간염)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지원 (사업별 위탁의료기관 상이) – 어린이국가예방접종(17종) – 만 65세 이상 독감, 폐렴구균 – 임신부 독감 등 지원
지원절차		■ 관내 주민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이용 가능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비용지급
지원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 DTap-IPV/Hib혼합백신,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수두, Tdap, 폐렴구균, Td(파상풍,디프테리아), Hib(뇌수막염),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독감)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08~'09년 출생한 여아 (단, '08년생의 경우 2021년 1차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2차접종 비용지원) ■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 독감 : 10월경 실시 예정 ➪ 위탁의료기관 및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폐렴구균 : 연중 실시(56년생 이전 어르신 중 미접종자 대상) ➪ 위탁의료기관 및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 대상 : 임신 주수에 상관 없이 임신 중인 여성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접종 가능(21년 4월 30일 종료 및 10월경 실시 예정) (단, 방문 전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필요)

NO. 111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모자보건계 질병관리청 콜센터	☎460-3244 ☎139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서부권(소룡·미성·산북동) 지역주민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전화상담
운영내용		■ 주민 맞춤형 원스톱 건강상담실 – 기 간 : 연 중 (월~금) – 대 상 :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만성질환관리 :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 후 관련 질환 상담 및 교육 – 금 연 관 리 : 금연상담 및 금단증상 완화를 위한 금연보조제 지급 – 치 매 관 리 : 치매선별검사, 인지저하자 등 치매안심센터 연계 – 영 양 관 리 : 영양 및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상담 및 교육 – 운 동 관 리 : 체성분 및 기초체력측정 후 개인별 운동처방 및 교육 ■ 「키쑥쑥! 몸튼튼! 꿈나무 건강해지기프로그램」 – 기 간 : 방학중 (월~금/동계/하계) – 대 상 : 비만, 과체중 등 신체활동이 필요한 초등학생 2~6학년 ○○명 – 내 용 · 방송댄스, 음악줄넘기, 놀이형 신체활동 교육 · 건강생활실천교육(금연·금주, 감염병 예방, 구강보건) · 아동정신건강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 영양교육 및 부모님과 함께하는 편식 예방 요리교실 · 프로그램 참여 전·후 체성분, 기초체력 검사 후 결과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시 비대면 온라인교육 전환 ■ 「만성질환예방관리 혈압·혈당 관리받GO! 건강지키GO!」 – 기 간 : 2~11월 (월·수/3기) – 대 상 : 고혈압, 당뇨 환자 및 고위험군 등 ○○명 – 내 용 · 기초검진(혈압·혈당) 후 1:1 개별 상담 및 교육 · 질환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관리, 질환별 식이요법 건강강좌 · 생활체조,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및 운동교육

	・3저(저염, 저당, 저열량) 건강밥상 만들기 조리실습 ■ 치매 인지강화 「오감만족 뇌청춘 치매 교실」 – 기 간 : 2~11월 (화·목/2기) – 대 상 : 인지저하자 등 치매 고위험군 ○○명 – 내 용 ・인지훈련(매뉴얼 책자 활용) 및 인지교구활동 ・인지증진활동(향기, 원예심리치료 등) ■ 「대사증후군 타파! 백세만세 운동교실」 – 기 간 : 3~11월 (화·목/2기) – 대 상 : 60세 미만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 ○○명 – 내 용 ・사전·사후 기초검진(혈압·혈당·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요가, 필라테스 등 유산소운동 및 근력운동 ■ 「여성건강플러스! 함께하GO 건강해지GO 프로그램」 – 기 간 : 3~11월 (월·수·금/2기) – 대 상 : 체중관리가 필요한 30~50대 여성 – 내 용 ・사전·사후 기초검진(혈압·혈당·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근육이완 및 혈액순환 촉진을 위한 폼롤러·필라테스링 등을 이용한 신체활동 ・심리적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캘리그라피 ・건강체중을 위한 저열량 웰빙음식 만들기 조리실습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시 비대면 온라인교육 전환 ■ 서부권 지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기 간 : 연 중 (월~금) – 대 상 : 서부권역 건강취약계층 – 방 법 : 방문간호사 각 가정 방문 – 내 용 ・가정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질환력 및 약물복용 상담, 낙상예방 등 교육 ・재가암환자 영양제 지급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 ・보건소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

Ⅶ. 기 타

NO. 112

희망스터디

교육지원계	☎454-258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로 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신청서류	■ 이용학생 : ①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맹학원 : ① 가맹학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육청 발급)교육비 신고 확인서
선정기준		■ 사업기간 : '21. 1 ~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내용 : 특기적성과목(음악·미술·컴퓨터 등)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월100천원 이내 20만원 이하 : 시 50%, 학원후원 40%, 본인부담 10% 20만원 초과 : 시 10만원, 학원후원 40% 이상, 본인부담 20% ■ 지원절차 ① 신청자 신청 안내(대상자) → ②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③점수 산정표 및 명단 작성 → ④공문 제출(산정표 : 읍·면·동 보관, 명단 : 교육지원과제출) → ⑤ 이용자 선정 및 통보(교육지원과) → ⑥ 이용자안내 공문 발송(읍·면·동) → ⑦ 서비스 이용(이용자)
지원내용		■ 학원비 지원기준(월별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 이내 ■ 매월 말일 수강확인증, 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익월 15일이내 지급 ■ 가맹학원은 이용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이용 종료 후 3년간 비치

NO. 113

마중물 사업

교육지원계	☎454-258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정 중학생 자녀로 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자
신청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신청서류	■ 이용학생 : ①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맹학원 : ① 가맹학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육청 발급)교육비 신고 확인서
선정기준		■ 사업기간 : '21. 1 ~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170,000천원 ■ 사업내용 : 교과목(국·영·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월120천원 이내 20만원 이하 : 시 60%, 학원후원 40% 20만원 초과 : 시 12만원, 학원후원 40% 이상, 본인부담 20%-2만원 ■ 지원절차 ① 신청자 신청 안내(대상자) → ②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③점수 산정표 및 명단 작성 → ④ 공문 제출(산정표 : 읍·면·동 보관, 명단 : 교육지원과제출) → ⑤ 이용자 선정 및 통보(교육지원과) → ⑥ 이용자안내 공문 발송(읍·면·동) → ⑦ 서비스 이용(이용자)
지원내용		■ 학원비 지원기준(월별 지원기준) : 1인/월120천원 이내 ■ 매월 말일 수강확인증, 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익월 15일이내 지급 ■ 가맹학원은 이용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이용 종료 후 3년간 비치

NO. 114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2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①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청	신청기간	■ 매년 5월 ~ 12월경
	사용기간	■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4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읍면동 비치)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보장시설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수혜자 등)
지원내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차감형)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비고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
＊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거주자

NO. 115

연탄쿠폰 지원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자
신청	신청기간	■ 매년 7월경
	사용기간	■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4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류	■ 연탄쿠폰 신청서(읍면동 비치)
지원내용		■ 472천원/세대당 (2020년 지원 기준)

NO. 116

등유바우처 지원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2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②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아동 포함)
신청	신청기간	■ 매년 7월 ~ 8월경
	사용기간	■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후 직접 카드발급
	신청서류	■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나눔카드 – 310천원/세대당 (2021년 지원 기준, 포인트 충전)

NO. 117

취약계층 에너지(LED) 복지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세대 및 복지시설(경로당 등)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2월경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류	■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세대 및 복지시설 고효율(LED) 조명 교체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

NO. 118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 ■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신청	신청기간	■ 매년 5월경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류	■ 없음
지원내용		■ 난방시설(보일러)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등

NO. 119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신청	신청기간	■ 매년 2~3월경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류	■ 없음
지원내용		■ 가스 타이머콕(가스연소기 안전장치*) 설치 (가구당 5만원 상당) * 가스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

NO. 12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에너지관리계	☎454-271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신청	신청기간	■ 매년 2~3월경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서류	■ 없음
지원내용		■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설치 등

NO. 121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특수학습계	☎454-5920~5

구 분	내 용
내 용	■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현황	■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장애인체육관 1층) ■ 교육과정 : 오전반(10시~12시), 오후반(13시~16시) ■ 프로그램 : 오전반(자립생활교육, 맞춤형 직업교육, 직업역량강화교육) 오후반(자립교양교육, 맞춤형 직업교육, 직업역량강화교육) ■ 모집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발달장애인 ■교육담당 : 특수교사 5명 및 외부강사 30명 [보조교사 4명] ※ 통학버스 운행 : 일 2회[10시, 16시]
안내사항	❍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 신청절차 : 내방접수(상담 시 수강생 동반 필수) – 2주간 시범 이용기간동안 활동평가 후 최종 등록여부 확정 ※ 독립적 신변처리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 동반 필수** ■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사진(3cm×4cm) 1매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급처치 치료동의서 1부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이 용 료 – 식 비 : 식사일자 × 4,000원 – 수강료 : 수강 강좌 수에 따라 차등[1~3만원] *수급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월~금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상담 ⇒ 2주간 시범 이용 및 활동평가 후 등록여부 결정 ⇒ 교육프로그램 이용**

NO. 12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술진흥계	☎454-3283
전북 문화관광재단	☎230-7446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15.12.31. 이전 출생자)
신청	신청기간	■ 2021. 2. 1. ~ 11. 30.
	신청방법	■ 전국 주민센터 /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 전화ARS(1544-3412)
	신청서류	■ 공통서식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1인당 연 10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NO. 123

물복지 급수공사 지원사업

급수계	☎454-5404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읍면지역 미급수세대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시
신청	신청방법	■ 수도과 방문 또는 읍면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식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단독주택)
선정기준		■ 지원 가능대상(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①항 1, 2, 3호)) – 읍면지역 단독주택 가정용 신설급수공사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로부터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및 살처분 매몰 위험지역(반경 500m이내)된 학생
지원내용		■ 가정용 신설급수공사비 – 읍면지역가정용 : 1가정 1백만원지원, 초과시 초과금 50%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 공사비 전액지원

NO. 124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체육관	☎442-7707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이용절차</td><td>■ 신청 문의 ⇒ 상담 ⇒ 회원등록 및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td></tr>
<tr><td colspan="2">운영시간</td><td>■ 월~금 09:00~18:00</td></tr>
<tr><td rowspan="2">주요시설</td><td>2층</td><td>

<table>
<tr><td>명칭</td><td>다목적체육관</td><td>명칭</td><td>다목적강당</td><td>명칭</td><td>체력단련실</td></tr>
<tr><td>면적</td><td>823.78㎡</td><td>면적</td><td>196.54㎡</td><td>면적</td><td>141.36㎡</td></tr>
<tr><td>용도</td><td>농구, 골볼, 배드민턴, 좌식배구 등</td><td>용도</td><td>세미나, 프로그램 등</td><td>용도</td><td>헬스</td></tr>
</table>

<table>
<tr><td>명칭</td><td>운동처방실</td><td>명칭</td><td>남,여 샤워실/탈의실</td><td>명칭</td><td>가족샤워실 1,2</td></tr>
<tr><td>면적</td><td>32.2㎡</td><td>면적</td><td>남-58.2㎡ 여-60.66㎡</td><td>면적</td><td>31.85㎡</td></tr>
<tr><td>용도</td><td>운동측정, 처방 및 상담</td><td>용도</td><td>목욕, 탈의</td><td>용도</td><td>장애인 가족동반 목욕</td></tr>
</table>
</td></tr>
<tr><td>3층</td><td>

<table>
<tr><td>명칭</td><td>당구교실</td><td>명칭</td><td>탁구교실</td><td>명칭</td><td>다목적실</td></tr>
<tr><td>면적</td><td>96㎡</td><td>면적</td><td>108.56㎡</td><td>면적</td><td>75.67㎡</td></tr>
<tr><td>용도</td><td>당구프로그램, 엘리트선수 훈련</td><td>용도</td><td>탁구프로그램, 엘리트선수 훈련</td><td>용도</td><td>요가 등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대관 안내</td><td>■ 체 육 경 기 : 평일-40,000원 / 공휴일-60,000원
■ 체육경기 외 : 평일-100,000원 / 공휴일-150,000원</td></tr>
</table>

〔부록〕

사회복지시설 · 기관 주소록

참고1 복지 관계 기관

1 사회복지관

(단위 : 명)

시 설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이용인원 (일평균)	비고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황경호	칠성로 59(산북동)	063-461-6555-6	200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장정열	문화로 36(나운동)	063-462-7260-1	700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명재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466-7981	370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박민권	둔매미길29(중앙2가)	063-442-4227	800	
금강노인복지관	박희수	백릉로 245(구암동)	063-442-0012	400	

2 기타 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장	설립일	정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노숙인시설	신 애 원	최성운	82.05.29	60	새터길 20 (구암동)	063-445-1782	
모자시설	신모자광원	김인곤	57.06.21	24세대	부곡로 195	462-7840	생활시설
	신모자자립광원	김인곤	92.02.10	24세대	한밭1길 352	461-2572	〃
어린이집		■ 190개소(국공립-19, 법인·외 -32, 민간-67, 가정-66, 직장-6)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46개소					

3 장묘 시설

구 분	공설묘원	추 모 관			승 화 원	비고
		1관	2관	3관		
수용규모	3,760기	652기	7,546기	11,306기	5기(화장로)	
사용기수	3,079기	652기	6,444기	9,357기		
잔여기수	681기	0기	1,102기	1,949기		
※ 공원묘지 추석 전·후 개장유골 증가						

4 장애인복지 기관·시설

구분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비 고
생활시설	군 산 목 양 원	회현면 남군산로 322-45	466-6088		
	나 포 길 벗 공 동 체	나포면 철새로 1127-19	453-3993		
	더 숨 9 9 지 원 센 터	옥구읍 할미로 171	464-9944		
지역사회재활시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칠성안3길 37	466-7981	466-7983	
	군산장애인종합 복지관부설주간보호센터	칠성안3길 37	466-7981	466-7983	
	구세군목양원 주간보호시설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466-6088	466-6028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림길 25(소룡동)	466-0666	466-0667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	수송로 71. 203동 104호 (나운동, 금호타운2차아파트)	468-6032	468-6030	
	산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월명안길 1	446-4460	446-4461	
	군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설림길 25(소룡동)	445-6361	446-6362	
	군산시수어통역센터	구영1길 138-2	462-0221	462-0224	
학교	명화학교	나운1동 상나운 1길 37	462-2159	461-2462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월명동 2-1 YMCA 3층	446-4460	446-4461	
발달장애거주시설	군산목양원	회현면 남군산로 322-45	466-6088	466-6028	
	나포길벗공동체	나포면 철새로 1127-19	453-3993	453-4994	
	더숨99지원센터	옥구읍 할미로 171	464-9944	464-9940	
그룹홈	해오름 1호	해망로 447, 105동 101호 (소룡동, 성원상떼빌아파트)	070-774-9-382		
	해오름 2호	서당길 11, 102동 104호 (구암동, 현대아파트)	451-4516		
	해바라기	대학로 114-1, 6동 102호 (금광동, 금광삼성아파트)	070-8148-0911	463-7532	
	나현네집	나운로 39, 204동 406호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468-7004	468-7004	
	해나지오	서당길 11, 113동 1204호 (구암동, 현대아파트)	466-2510		
직업재활시설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대야면 동중길 42-8	452-0911	452-0912	
	자윤보호작업장	동군산로 122, 1호(성산면)	453-8161	453-8162	

5 아동·청소년복지 기관·시설

1. 아동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장	설립일	정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아동시설	일 맥 원	이상훈	70.04.30	80	석치2길 14	462-2385	생활시설
	모세스영아원	전경숙	58.05.30	40	쌍천로 82-13	452-4075	〃
	삼성애육원	최규라	52.06.20	70	구영2길 15	445-5947	〃
	구세군후생학원	김종탁	52.06.10	75	월명로 514	445-9331	〃
	평화의 집	황재철	06.09.13	7	동아로 160,105/409	468-2283	그룹홈
	행복의 뜰	서영희	07.02.28	7	축동로 188,103/103	461-7344	〃
	평안한 집	마중철	06.03.28	7	하나운로 43,201/1004	465-7431	〃
	꽃동산	황수영	10.04.30	7	검다매안길 6-6	452-1324	〃
	신나는 집	김주영	10.08.31	7	풍문2길35,103/1004	442-7634	〃
	해바라기	한미경	11.05.09	7	진포2길 53-5, A/501	070-8783-9532	〃
	우림	유봉자	11.10.04	7	공단대로54, 105/1104	446-1218	〃
	샬롬	김연옥	11.10.06	7	나운우회로 38	463-7001	〃
	참조은집	조은희	12.08.02	7	공단대로54, 105/301	453-9920	〃
다함께돌봄센터 (밝은마음키움터)		김선영	20.02.01	24	미룡로 12	464-8005	이용시설

2. 청소년시설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비고
1	군산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리2길 7	468-2870	468-2872	
2	군산시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회관로 75	461-4166	461-3888	
3	군산시청소년 문화의집	양안로 133	451-7942	451-7943	
4	군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중앙로 224	463-1230	463-1266	
5	Wee 센터	군산교육지원청	450-2681	451-0180	
6	가온누리대안학교	해망로 392 4층	070-8738-1318	442-1318	

6 노인복지 시설

1. 생활시설

연번	기 관 명	정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성모양로원	37	서수면 외무장길 87-8	453-8400	
2	군산행복한집	96	설림2길34-10(소룡동)	462-7214	
3	정다운요양원	55	쌍천로 37(개정동)	451-9750	
4	시온의집	87	임피면 남상1길 33	453-2044	
5	보은의집	146	서수면 동군산로1088-8	451-8778	
6	성모전문요양원	69	서수면 외무장길87-8	453-7501	
7	보현노인전문요양원	80	설림길 30(소룡동)	463-3600	
8	지극히작은자의집	29	대야면 보덕안정길41	451-1346	
9	베데스다요양원	25	서수면 신중용1길 23	453-9023	
10	사랑의집	21	회현면 표산길 100	466-5911	
11	대광노인요양원	29	진포3길24-19(수송동)	461-6679	
12	로뎀요양원	28	소룡안1길 28(소룡동)	467-8046	
13	군산소망요양원	23	나포면 미루매길 127	451-9950	
14	봉정요양원	74	쌍천로 82-3(개정동)	450-3901	
15	나눔노인요양원	29	옥산면 대위로 117-22	464-7715	
16	행복의집	16	옥산면 대려2길 16	465-3330	
17	우리들너싱홈	100	경촌안 1길12(조촌동)	442-7907	
18	사랑마을요양원	29	나포면 서왕길 84-9	453-9902	
19	군산함께하는요양원	29	서수면 화등길 139-14	451-0884	
20	사마리타군산요양원	18	개정면 충량1길 12	452-5552	
21	엘림요양원	49	서래내길 72(경암동)	442-1151	
22	에덴의 집	29	개정면 원아산2길 79	731-2033	
23	벧엘요양원	71	조촌5길 16(조촌동)	452-0800	
24	김성배힐링홈	48	백토로 345-3(문화동)	462-2661	
25	행복한요양원	49	옥구읍 수산길 71-21	464-7763	
26	살고싶은집 삼마요양원	99	나포면 철새로 342	451-8899	
27	우리요양원	49	조촌2길 62(조촌동)	452-6400	
28	늘사랑실버홈	45	나운우회로131-1	465-0027	
29	정성요양원	9	검다메안길22(조촌동)	442-7135	
30	데레사의집	6	신설로7,101호(나운동,청남하이츠빌리지)	468-1271	
31	365옥산공동생활가정	9	옥산면 대려2길 18-1	468-4785	
32	늘푸른요양원	9	옥구읍 상평향교길 76	462-0377	

2. 이용시설

연번	기 관 명	정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57	조촌안4길 19 (조촌동)	442-4226	
2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21	임피면 임피2길 73-3	453-9998	
3	나운주간노인복지센터	15	문화로 36 (나운동)	465-7260	
4	가족사랑장기요양전문기관	9	조촌4길 25	465-9142	
5	씨앗노인복지센터	13	서수면금암초교길 11-21	453-5377	
6	은혜재가노인복지센터	48	미성로 428 (산북동)	468-6896	
7	아펜젤러 사랑의집	16	내초안길 12 (내초동)	467-0197	
8	동군산재가복지센터	21	임피면 호원대3길 31	454-8600	
9	벧엘주간보호센터	41	조촌5길 16 (조촌동)	452-0800	
10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40	나운우회로 131-1(나운동)	468-0027	
11	오손도손노인복지센터	21	진포3길 51 (동흥남동)	462-0613	
12	군산은파노인주간보호센터	105	공단대로 468(나운동)	464-2122	
13	사랑마을요양원	24	나포면 서왕길 84-9	453-9902	
14	옥구노인주간보호센터	16	옥구읍 옥구로 55	471-8866	
15	365옥산재가노인복지센터	19	옥산면 대려2길 18-1	468-4785	
16	이웃사랑재가복지센터	60	동수송안길 55	471-3957	
17	나운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50	나운로 4, 401호(문화동)현대코아	462-9900	
18	소룡복지센터	32	설림안3길 17 (소룡동)	467-5886	
19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19	계산2길 10-13(지곡동)	471-7591	
20	군산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49	죽성로 7, 4층(장미동)	442-5510	
21	군산백세주간보호센터	37	문화로37, 201호(문화동, 대한빌딩)	465-5536	
22	군산재가노인복지센터	102	계산2길 80	464-5223	
23	사랑으로재가노인복지센터	25	하신안길 12	467-6411	
24	가온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8	미원로 77	464-6868	
25	회현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14	회현면대위로405	464-9400	
26	강남재가노인복지센터	41	설림5길 76-18	464-2112	
27	군산은성재가노인복지센터	27	하나운3길 16	471-3800	
28	수송재가노인복지센터	65	서흥2길 74-3	465-8370	
29	미룡재가노인복지센터	28	칠성3길 19(미룡동)	465-3891	
30	수송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56	수송동 축동1길 7	467-2828	
31	구암동산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62	마자골길 31	445-1133	
32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	44	대학로 246,2층(나운동)	461-4572	
33	더조은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44	공단대로 226	463-7272	
34	살림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21	칠성4길 71	465-6500	
35	청춘시대재가노인복지센터	52	경장동 544-13	452-7656	
36	고래재가노인복지센터	11	경암5갈 77-13	442-6761	
37	즐거운재가노인복지센터	63	군산시 수송3길1(201,301호)	466-4519	
38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	15	칠성로120, 402호(산북동)	463-3336	
39	사랑의집재가노인복지센터	10	임피면 축산1길 20-8	451-3599	
40	군산매일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70	수송남로 14(수송동)	443-5577	
41	골드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81	대학로 78(월명동)	465-5599	

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구분	시설명	대표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가정의집	박경순	비공개	비공개	16명 (정원)
성폭력 보호시설	은혜의쉼터	김윤미	비공개	비공개	10명 (정원)
가정폭력 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민인순	구영7길 8 (월명동)	445-228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신옥자	대학로 36-1 (중앙로1가)	442-1560	
성폭력 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김혜영	구영7길 8 (월명동)	442-1570	

8 여성폭력피해 이용시설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비 고
1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구영7길 8, 1층	442-1570	445-1377	
2	군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시 구영7길 8, 2층	442-1560	445-2286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시 대학로 36-1, 3층	445-2285	446-1563	

9 타지역 복지기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비 고
1	동방전북아동 상담소	전주시 덕진구 인교6길 13-13	070-8769-3860	284-3341	
2	전북가정위탁 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276-2600~1	276-2602	
3	전북보육정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276-8080	276-0500	
4	홀트 아동복지회 전북아동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중산2길 7	288-0880	222-0775	
5	전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인북로 377	852-1391	852-1398	
6	맑은집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861-9950	861-9952	
7	전북 여성긴급전화 1366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063-1366	224-1366	
8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129		

참고2 읍면동 주민센터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행 정 동
1	옥구읍사무소	옥구읍 옥구로 6	454-7010	454-7009	옥정리,상평리,이곡리, 수산리,오곡리,선제리,어은리
2	옥산면사무소	옥산면 신성로 200	454-7040	454-7039	옥산리,남내리,쌍봉리, 당북리,금성리
3	회현면사무소	1회현면 대정리 23	454-7070	454-7069	월연리,금광리,대정리, 세장리,고사리,학당리, 원우리,증석리
4	임피면사무소	임피면 남상2길 1	454-7100	454-7099	읍내리,축산리,미원리, 보석리,술산리,월하리, 영창리
5	서수면사무소	서수면 항쟁로 193	454-7130	454-7129	서수리,축동리,관원리, 마룡리,화등리,금암리
6	대야면사무소	대야면 석화로 7	454-7160	454-7159	산월리,지경리,복교리, 광교리,접산리,죽산리 보덕리
7	개정면사무소	개정면 바르매길 42	454-7190	454-7189	아동리,운회리,아산리, 통사리,발산리,옥석리
8	성산면사무소	성산면 송호로 222	454-7220	454-7219	성덕리,둔덕리,고봉리, 도암리,여방리,대명리, 창오리,산곡리
9	나포면사무소	나포면 나포초교길 9	454-7250	454-7249	나포리,장상리,옥곤리, 부곡리,주곡리,서포리
10	옥도면사무소	내항2길 125	454-7280	454-7279	개야도,죽도,연도,어청도,야미 도,신시도,선유도, 무녀도,장자도,대장도, 관리도,말도,비안도,두리도
11	옥서면사무소	옥서면 옥구 저수지로 209	454-7310	454-7309	옥봉리,선연리
12	해신동 주민센터	중앙로 224	454-7340	454-7339	해망동,신흥동,금동
13	월명동 주민센터	구영1길 138-2	454-7370	454-7369	월명동,신창동,중앙로1가동, 영화동,장미동,선양동, 둔율동,창성동,명산동, 송창동,개복동
14	삼학동 주민센터	미원로 17	454-7400	454-7399	금광동,오룡동,삼학동
15	신풍동 주민센터	대학로 215	454-7430	454-7429	신풍동,송풍동,문화동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행 정 동
16	중앙동 주민센터	신영 3길 11	454-7460	454-7459	중앙로2가동,신영동, 영동,죽성동,평화,중동, 금암동
17	흥남동 주민센터	월명로 386	454-7490	454-7489	중앙로3가동,대명동,장재동,미원동,동흥남동,서흥남동
18	조촌동 주민센터	조촌로 102	454-7520	454-7519	조촌동, 경장동
19	경암동 주민센터	경암3길 56	454-7550	454-7549	경암동
20	구암동 주민센터	세풍길 21	454-7580	454-7579	구암동,내흥동
21	개정동 주민센터	번영로 339-5	454-7610	454-7609	개정동,사정동
22	수송동 주민센터	동수송1길 7	454-7640	454-7639	수송동,미장동,지곡동
23	나운1동주민센터	나운동 신설 3길 3	454-7680	454-7679	나운동
24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3길 16	454-7710	454-7709	나운동
25	나운3동주민센터	부곡1길 25	454-7750	454-7749	나운동,미룡동,신관동, 개사동
26	소룡동 주민센터	설림 5길 83	454-7790	454-7789	소룡동,오식도동,비응도동
27	미성동 주민센터	미성문화길 4-5	454-7820	454-7819	산북동,개사동,신관동, 내초동